

研究報告 109
1985. 12

農村地域 綜合開發에 관한 研究④

定住生活圈 設定 및 類型化

崔 洋 夫(研究委員)
李 正 煥(臨時研究員)
鄭 喆 謨(研究員)
金 香 子(臨時研究員)

韓國農村經濟研究院

빈 면

머 리 말

1960年代以後 급격한 工業化와 都市化過程을 통해 야기된 大都市 中心의 國土空間分化는 人口配置上的 不均衡과 地域間 所得의 隔差를 심화시켜 왔다.

따라서 날로 심화되고 있는 國土利用의 偏在化와 人間定住空間에 대한 不均衡的 發展을 시급히 시정해야 할 必要性이 增大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地域住民이 그들의 地域을 떠나지 않고서도 安定된 일 자리와 所得을 올릴 수 있고 必要的 生活의 便益을 享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國土空間에 대한 새로운 認識과 함께, 生産·生活·生態의 空間이 調和된 人間定住의 國土空間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必要性이 제기 된다.

本 報告書는 韓國農村經濟研究院이 지난 1982年以後 계속 研究해 온 農村定住生活圈開發計劃과 農漁村地域綜合開發을 보다 具體化하고 擴大·發展시키기 위해 全國的인 次元에서 定住生活圈의 設定 및 類型化를 시도하고 農村定住生活圈은 다시 細分하여 類型區分하였다.

當 研究院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農村定住生活圈과 農漁村綜合開發에 관한 研究事業을 發展시켜 나아갈 것이며, 本 研究에서 未洽한 부분은 계속해서 補完 發展시킬 計劃이다.

끝으로 本 報告書가 政府의 農漁村地域綜合開發事業의 政策資料로 널리 活用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1985. 12.

韓國農村經濟研究院長 金 榮 鎮

目 次

第 1 章 序 論

1. 問題提起·····	1
2. 研究目的과 範圍 ·····	3
3. 研究方法·····	3

第 2 章 國土計劃上の開發圈域과 問題點

1. 第 1 次 國土綜合開發計劃 (1972 ~ 81)·····	5
2. 第 2 次 國土綜合開發計劃 (1982 ~ 91) ·····	7
3. 韓國의 地域開發政策의 特色과 反省 ·····	11

第 3 章 定住生活圈의 意義

1. 人間中心의 國土認識 ·····	14
2. 人間定住生活空間의 形成과 定住生活圈 ·····	16
3. 定住生活圈 概念에 의한 國土認識과 地方開發 ·····	19

第 4 章 定住生活圈 設定에 대한 理論的 接近

1. 傳統的 空間理論 ·····	23
2. 地域計劃上の 圈域 ·····	34
3. 定住生活圈 設定의 前提 ·····	38

第 5 章 定住生活圈의 設定

1. 設定基準과 方法 ·····	41
2. 定住生活圈의 設定 ·····	45
3. 設定된 定住生活圈의 內容 ·····	55

第 6 章 定住生活圏의 類型化

1. 定住生活圏의 類型	58
2. 農村定住生活圏의 類型	64

第 7 章 要約 및 結論

71

附錄 1. 定住生活圏의 現況	73
-----------------------	----

附錄 2. 調査表	96
-----------------	----

表 目 次

第 5 章

表 5 - 1	새로 調整된 地域과 調整圈	50
表 5 - 2	人口規模別 定住生活圈	55
表 5 - 3	中心半徑別 定住生活圈	55
表 5 - 4	面積에 따른 定住生活圈	56
表 5 - 5	人口密度에 따른 定住生活圈	57

第 6 章

表 6 - 1	類型化 I (大都市型, 都市型, 農村型).....	59
表 6 - 2	定住生活圈의 類型 I (大都市型, 都市型, 農村型)	62
表 6 - 3	“ II (成長度에 따른 區分).....	63
表 6 - 4	耕地率에 의한 類型區分の 基準	64
表 6 - 5	定住生活圈의 類型 III (地形條件에 따른 區分)	65
表 6 - 6	都市・農村型과 成長度別 交叉對照	66
表 6 - 7	平野型・中間型・山間型과 成長度間의 交叉對照	67
表 6 - 8	類型別 農村定住生活圈	68
表 6 - 9	農村定住生活圈의 類型	70
表 6 - 10	農村地域의 立地的 性格과 人口成長率에 따른 區分	70

圖 目 次

第 2 章

圖 2-1 第 1 次 國土綜合開發計劃 圈域圖	6
圖 2-2 第 2 次 國土綜合開發計劃 圈域圖	9

第 3 章

圖 3-1 人間定住空間의 形成과 發展의 一般模型	15
圖 3-2 人間定住生活空間의 形成과 發展	17
圖 3-3 定住生活圈과 2,3 次 生活圈과의 關係	18
圖 3-4 中心都市의 位階와 生活圈의 體系化(構想圖)	19
圖 3-5 定住生活圈의 空間構造	22

第 4 章

圖 4-1 튀넨의 모델	25
圖 4-2 베버의 입지 삼각형	27
圖 4-3 需要曲線	28
圖 4-4 需要圓錐와 單一市場圈	28
圖 4-5 網狀市場圈의 形成過程	29
圖 4-6 網狀市場圈의 空間編成	30
圖 4-7 中心地의 階層體系	31
圖 4-8 集積 可能地域	32
圖 4-9 計劃的 圈域을 規定하는 4 가지 要因	36
圖 4-10 計劃的 圈域의 3 가지 特性	38
圖 4-11 正六角形 패턴의 形成	40

第 5 章

圖 5 - 1	定住生活圏 設定에서 16 km 半徑을 選定한 理論的 根據	42
圖 5 - 2	定住生活圏의 圖式的 區分方法	43
圖 5 - 3	中心地 選定 및 圖式的 區分을 위한 作業圖	46
圖 5 - 4	定住生活圏의 理論的 區分圖 (164 圈域)	47
圖 5 - 5	定住生活圏의 理論的 試案 (164 圈域)	48
圖 5 - 6	定住生活圏의 圈域調整	49
圖 5 - 7	定住生活圏의 設定 (144 圈域)	54

第 6 章

圖 6 - 1	定住生活圏의 類型 I (大都市型, 都市型, 農村型)	60
圖 6 - 2	“ II (成長度에 따른 區分)	61
圖 6 - 3	“ III (地形圖에 따른 區分)	66
圖 6 - 4	農村定住生活圏의 類型區分	69

第 1 章

序 論

1. 問 題 提 起

우리 나라의 地域政策은 建國以後 最近에 이르기까지 經濟成長目標 達成을 위한 手段으로 推進되어 왔다. 특히 지난 1960年代와 1970年代에 걸친 高度經濟成長期에는 經濟的 效率性的 極大化에 모든 國家施策이 集約되었고, 國土開發은 下向式的 成長據點開發戰略에 의해 大都市 中心으로 이루어져 왔다(金 儀遠, 1982).

이러한 過程에서 不均衡的 國土開發이 進行되어 왔고, 이로 인한 人口와 產業의 大都市集中은 國土空間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分化和 함께 심각한 地方問題를 야기시켜 왔다. 그 중에서도 大都市의 過密空間과 農村의 過疎空間으로 대표되는 人口配置上的 不均衡과 生産과 所得의 地域間 隔差問題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限界點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다 產業社會의 結果로 파생된 生態界를 교란하고 人間定住生活을 위협하고 있는 環境汚染과 公害의 問題는 解決되어야만 하는 새로운 難題로 추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社會階層間的 不平等問題는 社會的 緊張과 葛藤을 더해 가고 있다.

이러한 大都市中心의 分極的 都市化와 工業化로 인한 首都圈과 地方間, 都市와 農村間에 심화되어 온 國土空間上의 不均衡은 이제 地域隔差라는 단순한 經濟的·物理的 次元의 問題를 벗어나 地域間, 社會階層間의 緊張과 葛藤을 高潮시키는 人間的·心理的 次元의 問題로 登場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現象은 都市와 農村 모두를 問題地域으로 만들어 2000 년대의 成熟한 產業社會를 指向하는데 있어 能率性과 衡平性を 同時에 제약하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崔 洋夫, 1985).

따라서 날로 심화되고 있는 國土利用의 偏在化나 定住空間의 不均衡의 發展은, 現在 韓國社會가 시급히 해결해야만 할 國家的 課題가 되어 있다. 만약, 우리 國土가 안고 있는 오늘의 問題狀況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國家的 當爲로 받아들인다면, 지금까지의 地域政策으로 採擇되어 왔던 下向式的 成長據點開發論은 마땅히 再考되어야 한다. 아울러 經濟主義的 觀點에서 照明되어 왔던 國土認識의 視覺은 人間主義的 觀點에서 再照明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國家總量經濟的 論理의 實現을 위해 設定되었던 圈域區分도 人間定住生活圈의 觀點에서 새롭게 調整되어야 한다.

지난 20 餘年間 지속되어 온 成長據點開發戰略에 의한 都市와 農村間의 不均衡發展과 地域隔差를 시정하고 人口의 適正配置를 유도하며, 상대적으로 落後되어 온 農村地域을 綜合開發하기 위해서는, 定住生活圈에 의한 새로운 開發戰略의 選擇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대체로 意見이 모아져 왔다(崔 洋夫, 1981, 1983, 1984, 1985 ; 朴炳柱 外, 1981 ; 崔 相哲, 1982).

定住生活圈開發論은 일정한 地域이 갖는 自然環境의 特性은 물론 社會的, 文化的, 歷史的 特性 등 多樣한 地域性과 地域의 與件을 고려하며, 무엇보다도 人間定住라는 觀點에서 地域住民의 生活圈이라는 立場을 강조한다. 따라서 地域住民의 生活便益에 우선하여, 地方과 그 住民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空間的인 틀로서의 새로운 圈域, 卽 定住生活圈의 設定이 必要하며, 이것의 開發은 그것이 갖는 多樣한 地域特性과 地域與件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類型化에 대한 研究 또한 동시에 必要하고도 시급한 研究課題라 아니할 수 없다.

2. 研究目的과 範圍

本研究는 定住生活圈에 의한 開發戰略이 擡頭되게 된 背景과 定住生活圈 設定에 대한 理論的 考察 및 그 圈域設定에 대한 基準을 마련하고, 마련된 基準에 따라 定住生活圈을 設定하여 새로운 開發의 地域單位를 具體化하는 동시에 設定된 定住生活圈을 類型化함으로써, 새로운 開發戰略에 의한 開發의 方向과 農村地域綜合開發에 대한 計劃과 實行에 있어 理論의 바탕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本研究的 研究範圍는 定住生活圈別로 空間的 範圍을 設定하고, 그것을 地理的인 特性과 人口成長趨勢에 따라 區分하여 類型化하는데 限定시켰다. 定住生活圈別 地域空間의 特性이나 中心都市의 機能에 따른 分析, 그리고 定住生活圈內나 定住生活圈間의 定住體系 및 上位의 地域生活圈과의 連繫와 관련된 問題에 대한 研究도 병행되어 이루어져야 하나, 短期間에 行해 지기에는 現實的으로 不可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研究는 次後的 研究課題로 남겨두기로 한다.

3. 研究 方法

本研究的 研究方法으로는 文獻研究, 現地調査 및 郵便調査, 그리고 統計調査와 地圖化作業을 통해 이루어졌다.

文獻調査로는 1·2次 國土綜合開發計劃 및 關聯文獻調査, 그리고 空間理論 및 農村空間分化에 대한 理論的 考察과 檢討, 定住生活圈設定 및 開發에 관한 理論的 考察을 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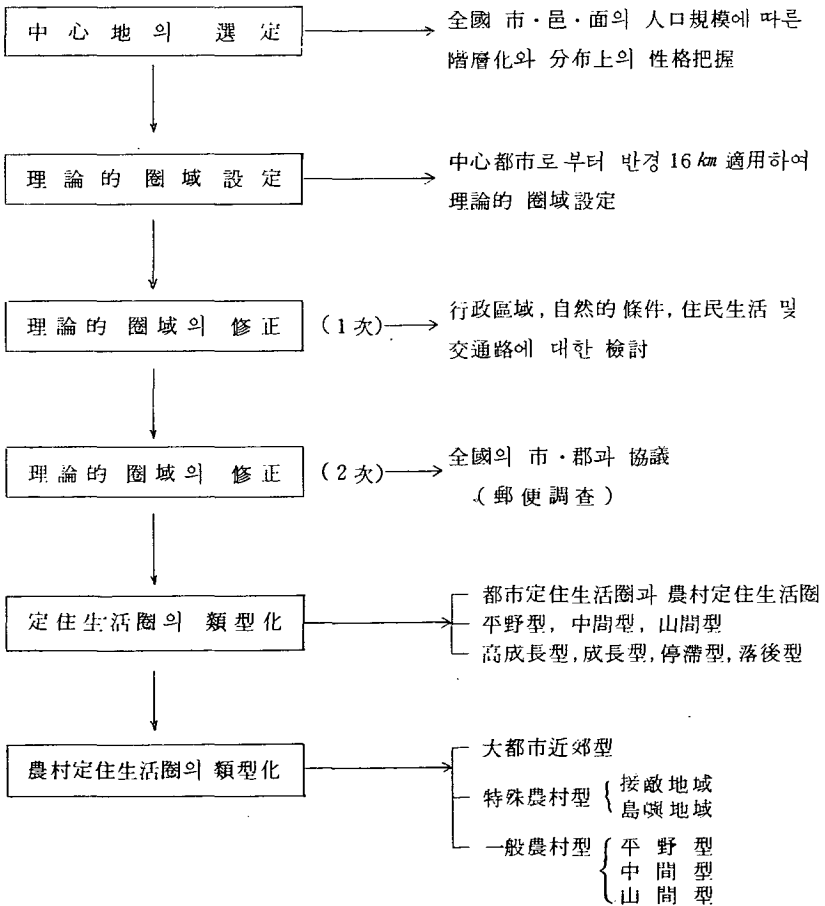
現地調査 및 郵便調査는 定住生活圈의 設定을 위해 必要한 圈域設定에 대한 妥當性調査와 設定過程에서 나타난 結果를 全國 50個 市와 139個 郡을 對象으로 郵便에 의한 質問紙調査를 하였다.

그리고 定住生活圈의 設定을 위해 必要한 基礎統計調査를 全國 各 市郡의 邑面單位로 취합하여 活用하였고 類型化를 위해 調査된 統計를 電算 處理하였다. 그리고 必要한 圖面作業을 병행하였다.

定住生活圈의 設定과 類型化研究에서 進행된 全體的인 研究節次는 아래와 같다.

研究節次

(內 容)



第 2 章

國土計劃上の開發圈域과 問題點

1. 第 1 次 國土綜合開發計劃 (1972 ~ 81)

가. 計劃背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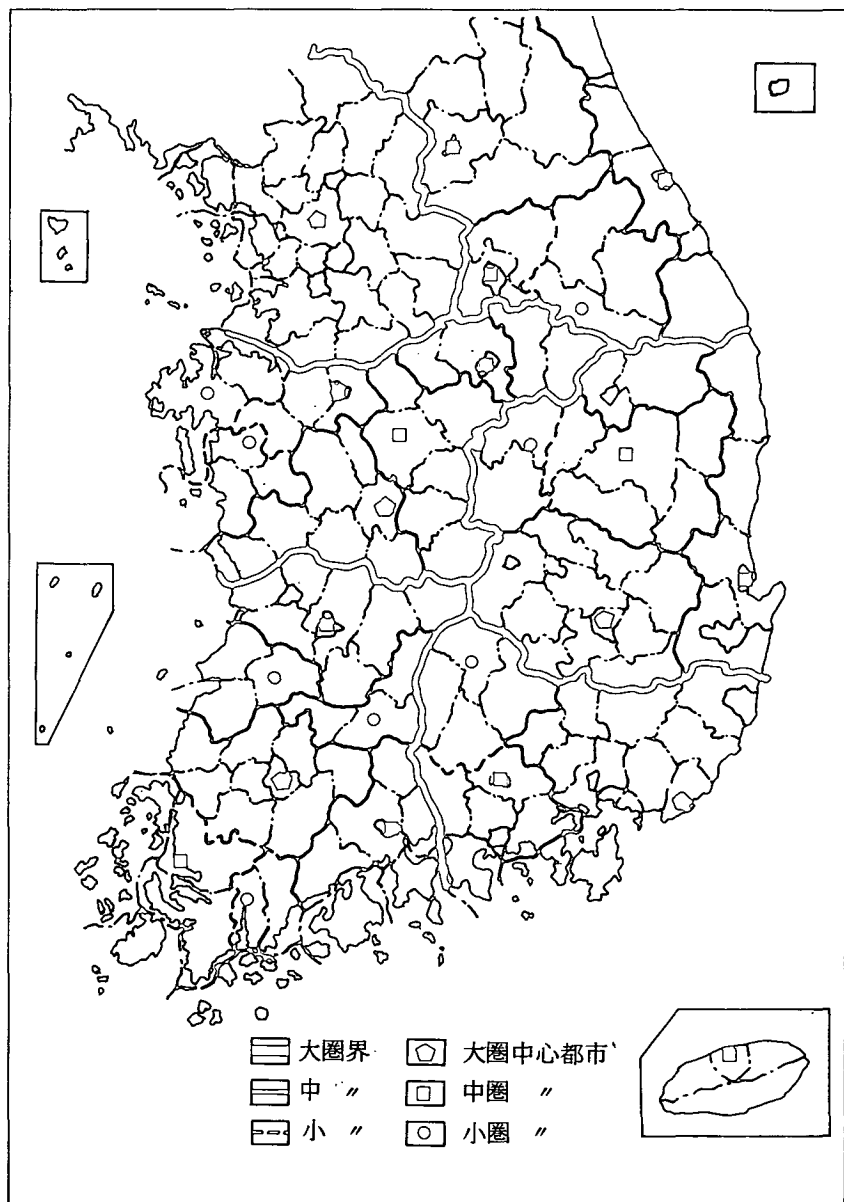
1960 年代부터 시작된 經濟開發計劃이 두차례에 걸쳐 成功的으로 달성됨에 따라 年平均 9.1 % (1962 ~ 71) 의 經濟成長과 基幹産業의 建設 및 育成 등을 통하여 産業近代化의 基盤을 마련하였다. 이와같은 經濟開發計劃의 성공적인 추진은 한국 사회를 新進工業國으로 成長케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工業化로 인한 急激한 都市化現象을 초래하여 人口 및 産業의 大都市集中과 所得의 地域間 隔差등 많은 問題를 야기시켰다. 따라서 工業化 및 都市化 過程에서 發生된 弊害를 除去하고 長期에 걸친 高度成長의 合理的 基盤을 構築하기 위해서는 全國土의 效率的인 利用과 開發을 위한 計劃이 切실한 課題로 登場하게 되었다.

이러한 視點에서 이 計劃은 國土利用 管理의 效率化, 開發基盤의 擴充, 國土包藏資源의 開發과 自然의 保護保全 및 國民生活環境의 改善을 基本目標로 하고 大規模 工業基地의 構築整備, 交通通信, 水資源 및 에너지 供給網整備 그리고 不振地域開發을 위한 地域機能強化를 開發政策으로 採擇하고, 이를 具體化하는 手段으로서 國土計劃基本構想(1968 年 確定)에 根據하여 開發圈域을 設定하게 되었다.

나. 開發圈域의 區分

서울中心의 星形的 發展形態를 이룬 中部地方 經濟圈과 釜山中心의 帶

圖 2 - 1 第 1 次 國土綜合開發計劃圖



狀發展을 이룬 南部地方 經濟圈의 2大 經濟圈으로 國土空間을 兩分하고 그 아래에 4大圈, 8中圈, 17小圈으로 區分하여 3階層의 圈域으로 設定하였다. 여기서 4大圈은 資源的 側面에서 河川流域을 中心으로 하는 等質性을 基準으로 劃定하였고, 8中圈은 道單位的 行政區域을 中心으로 그리고 17小圈은 8~10個 郡이 모여 經濟圈의 形成이 可能的 背後地와 中小都市를 감안하여 각각 劃定하였다.

이 중에서 이 計劃은 道單位的 行政區域을 中心으로 大都市中心의 廣域生活圈을 地域單位로 묶어 區分한 8中圈을 開發單位로 하였다<圖 2-1>

다. 問 題 點

第1次 國土綜合開發計劃의 圈域設定은 經濟開發을 위한 資源配分的 側面이 強調되어 國民生活의 質的 向上을 위한 社會開發的 側面은 輕視되어 왔다. 이러한 結果는 國家總量的 經濟成長과 機能的인 面의 成果는 있었다고 생각되나, 生活環境과 機會에 대한 國民福祉의 領域的인 面에서는 많은 問題點을 야기시키고 地域間 隔差를 심화시켜 왔다.

이와 같은 現象을 가져온 背景에는 첫째, 圈域區分에서 河川流域中心의 自然地理的 地域과 道單位 中心의 行政區域, 經濟圈 等の 圈域이 서로 연계를 이루지 못하였고 둘째, 開發單位地域으로는 너무 커서 實際와 거리가 멀고 實效도 거둘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셋째, 開發戰略으로 줄곧 下向式的 成長據點開發方式이 採擇되어져 온 結果로 풀이된다.

2. 第2次 國土綜合開發計劃(1982~91)

가. 計 劃 背 景

第1次 國土綜合開發計劃이 人口와 產業의 調和있는 配置 및 都·農間의 有機的 關係의 形成을 통한 國土의 均衡開發을 그 基本目標로 樹立되었으나, 投資財源의 限界上 大規模 產業基地를 中心으로 한 成長據點開發로서 集積의 利益을 追求하는 生産環境의 擴充에 注力하여 왔다.

이에 따라 工業基盤의 構築, 幹線交通網의 形成, 水資源의 綜合開發, 國土利用管理體系의 確立 등의 成果를 이루었으나, 大都市・工業爲主의 地域政策으로 서울・釜山 등의 大都市에 人口 및 産業의 集中現象은 더욱 심화되었고, 國土利用의 兩極化現象을 더해 왔다. 뿐만 아니라 國土環境의 毀損과 汚染, 生活環境施設의 相對的 落後, 土地利用의 無節制와 投機 등의 問題點이 派生되어졌다.

이러한 觀點에서 第2次 國土綜合開發計劃에서는 生産・生活環境 그리고 自然環境이 均衡있게 調和되고 地域間 均衡開發을 추진 하여, 人口의 地方定着을 유도할 必要가 있게 되었다. 이러한 要請에 의해 構想된 것이 地域生活圏이다.

나. 開發圈域의 區分

地域生活圏의 圈域設定은 自然的인 空間의 等質性과 地域間 流動에 의한 機能的 連繫性, 住民의 實生活에 대한 空間的 範圍에 대한 調査를 기초로 하고 장래의 計劃을 감안하여 設定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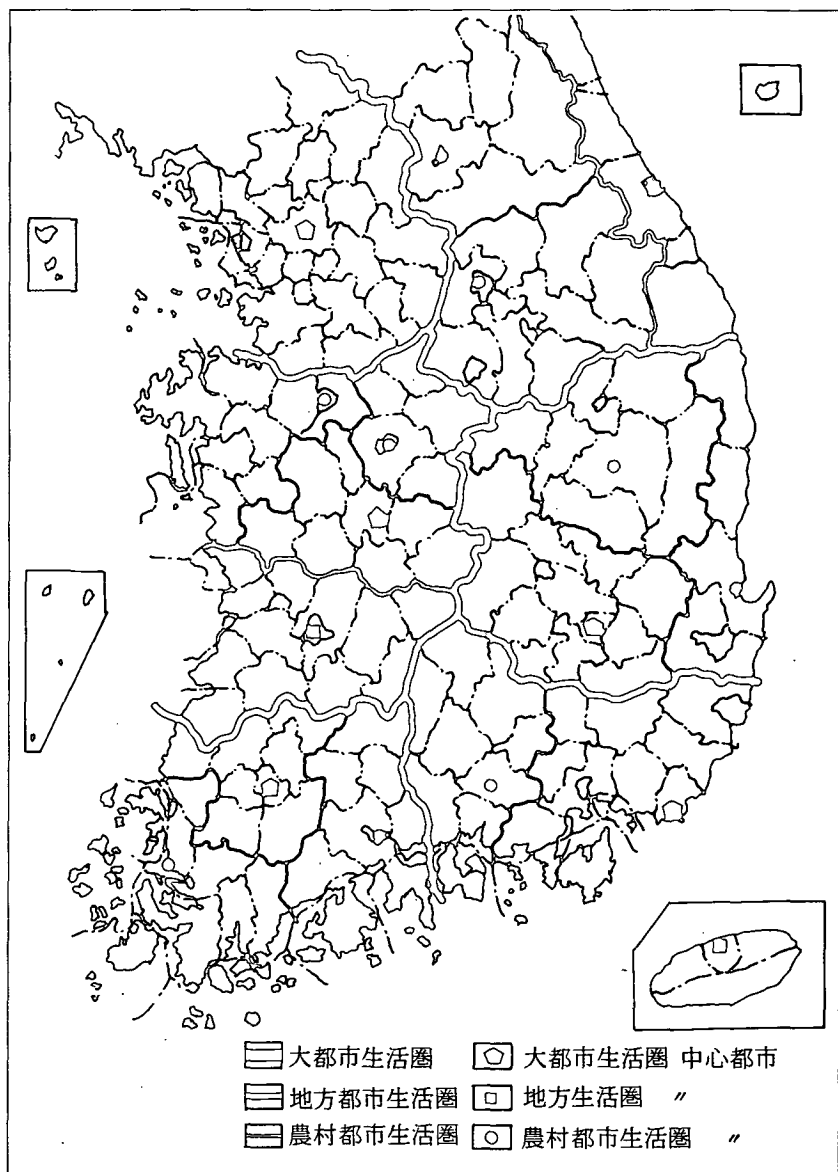
이와 같은 基準에 따라 全國을 人口規模로 파악하여 圈域을 설정하고 이들 圈域을 그 中心都市의 性格과 規模에 따라 大都市生活圏, 地方都市生活圏, 農村都市生活圏으로 區分하였다.

大都市生活圏은 現在 人口規模가 65 萬 以上이나 1991 年에는 100 萬 以上으로 增加가 예상되는 大都市를 中心으로 하는 生活圏이며, 地方都市生活圏은 周邊에 市級都市가 없는 곳에 市와 같은 水準으로 그 機能을 強化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한 地域의 邑級都市를 中心으로 하는 生活圏이다. 이렇게 해서 5 個의 大都市生活圏, 17 個의 地方都市生活圏, 6 個의 農村都市生活圏으로 區分하여 總 28 個의 地域生活圏으로 設定하였다<圖2-2>.

따라서 2次 國土綜合開發計劃의 圈域設定은 定住生活圏에 대한 概念을 명백하게 內包하고 있지 않다.

定住生活圏은 地域住民의 日常的인 經濟・社會・文化活動등이 이루어지는 最小單位의 生活圏인 동시에 自治行政의 最小 基本單位가 되는 圈域이다.

圖 2 - 2 第 2 次 國土綜合開發計劃區域圖



그러나 定住生活圏의 中心都市는 인구규모나 기능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서울이나 부산, 대구 또는 광주와 대전을 중심도시로 하는 定住生活圏과 남원이나 원주, 안동, 거창 등과 같은 도시를 중심도시로 하는 정주생활권에 있어서 중심도시의 기능이 정주생활권의 범위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와 그 범역을 벗어나서 다른 정주생활권의 中心都市나 그 背後地의 주민들에게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서울이나 부산 등과 같은 대도시는 자체의 1次的인 정주생활권의 중심도시가 되면서 동시에 다른 定住生活圏을 자체의 직접적인 영향권속에 포섭하는 지역생활권의 중심도시가 된다.

定住生活圏의 中心都市 가운데는 몇개의 정주생활권과 그 중심도시를 배후지로 하는 「지역생활권」의 중심도시적인 기능을 갖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廣域大都市圏」이나 「廣域都市圏」이란 定住生活圏 가운데 中心都市가 지역생활의 중심지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大都市와 中都市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地域生活圏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地域生活圏으로서 광역대도시권이나 廣域都市圏은 결국 일정한 수의 정주생활권을 포섭할 수 있는 중심도시의 규모와 기능에 의하여 분류되는 지역생활권의 類型에 불과하며 광역대도시권이나 광역도시권의 기본단위는 定住生活圏으로 구성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市級以下の 邑級都市를 중심도시로 하는 생활권을 定住生活圏으로 지칭하고, 大都市나 中都市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권을 광역대도시권 또는 광역도시권이라 부르는 것은 잘못된 개념설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정주생활권과 지역생활권을 생활권의 계층적 또는 位階的인 관계에서 파악하지 않고 平面的 關係에서 파악함으로써 以前의 圏域概念이 갖는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崔 洋 夫, 1985).

다. 問 題 點

第2次 國土綜合開發計劃의 圏域設定은 大都市中心의 分極的 都市化와

工業化를 더욱 심화시킬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 왔다(崔洋夫, 1982 ; 柳佑益, 1983 등). 그것은 現在의 農村地域의 空間構造나 地域住民의 日常生活圈을 고려할 때, 開發의 圏域單位로는 現實과 거리가 멀 만 큼 너무 크다. 또한 效率의인 開發計劃이나 執行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觀念的 概念으로 存在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成長據點都市에 대한 集中投資로 定住體系를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높다는 점이다. 이것은 1次 成長據點都市로 선정된 大田, 光州, 大邱의 成長에 의한 國土空間의 多核化가 分極化的 緩化라기 보다는 強化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1次 成長據點都市들은 오히려 기존의 서울, 釜山과 합류하여 下位 地域의 人口와 生産要素를 더욱 강력히 끌어내어 地域隔差를 더 더욱 심화시키고, 人口의 地方定着을 어렵게 함으로써 國土空間上에 定住體系의 不安定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柳佑益, 1983)

그리고 2次 計劃의 地域生活圈의 開發 역시 여전히 成長據點開發戰略이 선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理論의 本質이 都市와 工業을 指向하고 있고, 經驗的 事實이 落後地域의 開發方式으로는 적당하지 않음이 입증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地域住民의 發展과는 상당한 差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3. 韓國의 地域開發政策의 特色과 反省

가. 地域開發政策의 特色

우리나라의 地域開發政策은 앞서 언급한 第1次 國土綜合開發計劃(1972 ~ 81) 이 있기 以前은 復舊事業이나 個別的인 開發事業中心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그것은 經濟開發의 手段이거나 그 一部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다. 第1次 國土綜合開發計劃에서 地域計劃이 비로소 體系化되었으며 이로써 地域政策은 形式的이나마 제 位置를 찾게 된 셈이었다.

그러나 이 計劃에서는 그때까지 農林漁業中心의 生産體系를 위해 形成되고 가꾸어져 온 國土를 工業生産體系로 바꾸어 놓았고, 賦與된 機能이나 役割分擔은 地域의 與件은 무시된 채 國家的 次元에서 要請되어지는 일들이 下向的으로 주어졌다. 이러한 過程에서 傳統적으로 내려 온 安定된 定住社會가 붕괴되고 定着民을 流民化시킴으로써 都市化는 急速度로 進전되어 왔다(朴 炳 柱外, 1981).

다음으로 지적될 수 있는 우리나라의 地域開發政策의 特色은 工業을 主軸으로 한 成長據點開發方式이 採擇되어져 왔다는 점이다. 모든 地域政策의 決定權이 中央政府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地方行政機關은 中央에서 주어진 政策을 計劃에 따라 實行할 뿐이었다. 이러한 結果는 國家投資의 地域的 不均衡으로 인해 國土를 先進地域과 落後地域으로 分極化시키고 大都市의 過密과 農村地域의 過疎現象을 심화시켰다.

또한 成長據點開發戰略의 施行過程에서 地方의 問題나 地域的 次元에서 要請되는 地域開發의 觀點이 거의 무시되어 왔다는 點이다. 이것은 國家의 總量的 經濟成長에 가리워져 地方의 經濟는 뒷전으로 물러날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過程에서 國民의 모든 價值判斷의 기준은 經濟的 尺度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地方에 살고 있는 住民은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해 왔던 자기 고장의 自然과 文化를 서슴없이 버리고 都市의 人工과 文明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

나. 開發政策에 대한 反省

高度經濟成長期에 나타난 심각한 問題들에 대한 反省이 최근에 와서 國內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經濟成長은 그 自體가 目標가 아니며 그 보다 더 큰 目標을 위한 手段이라고 볼 때, 成長의 그늘 속에서 생겨난 副作用이 그간에 너무도 컸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開發政策에 대한 反省은 지난 20 餘年間에 施行되어 온 既存의 開發政策에 대한 反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工業化에 의한 經濟成長은 市場이나 資源에 있어 海外指向의이고 輸出指向의인 大企業과 重化學工業에 치중하여 왔다는 점이다. 이것은 진

정한 地方發展을 가져올 수 없었다. 또한 서울·釜山 등의 大都市 問題의 해결보다는 오히려 成長據點地域으로 선택된 地方에 工場이 하나 들어서면 서울에는 큰 빌딩이 하나 들어서는 식으로 大都市問題를 加重시켜왔다. 따라서 보다 많은 地域住民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地域이 나름대로 蓄積해 온 技術에 의한 生産方式으로 工業化하는 것이 重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른바 中間技術에 의한 地域開發이 관심을 끌게 된 것이다. 이것은 最新技術은 아니지만 많은 勞動力을 投入하면 상당한 生産量을 올릴 수 있는 技術을 지칭한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地域과 地域住民이 內包된 技術體系라고 할 수 있다(金世烈, 1985 참조).

다음으로 成長據點戰略에 대한 反省으로서 이것은 地域隔差를 심화시켰고, 據點이 아닌 地域에 相對的인 落後를 더해 왔다는 反省이다. 成長據點開發은 근본적으로 下向式開發方式의 性格을 규정짓는 核心的 條件이 되기 때문에, 政策의 樹立과 計劃의 主體가 中央政府에 局限된다는 사실은 그것이 少數의 官僚와 專門家集團에 의해 수행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地域住民의 立場에서는 他律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柳佑益, 1983). 또한 成長據點開發은 자칫 巨大主義로 흐르기 쉽고 따라서 單一機能으로 特화된 地域을 낳기 쉬워 外部環境의 變化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며 동시에 單一機能地域이 갖는 文化的 無味乾燥性은 地域住民의 定住意識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도 作用하게 된다. 따라서 成長據點開發地域은 國土의 均衡發展과 機能의 地方分散을 가져오는 手段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그 역으로 作用할 소지가 많을 수 있다는 反省이 일게 되었다(朴炳柱外, 1981).

이러한 점에서 地方의 生活環境의 向上과 地域住民의 生活이라는 측면이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것은 單位地域이 中心이 되어 그 地方에 알맞고, 필요로 하는 生活의 內容을 스스로 발견하고 이루어가야하므로 지금까지의 下向式 開發의 方式에서 上向式 開發로 開發戰略의 轉換이 要請되는 것이다. 이러한 要請에 따라 定住生活圈에 의한 開發戰略이 抬頭되게 된 것이다.

第 3 章

定住生活圏의 意義

1. 人間中心의 國土認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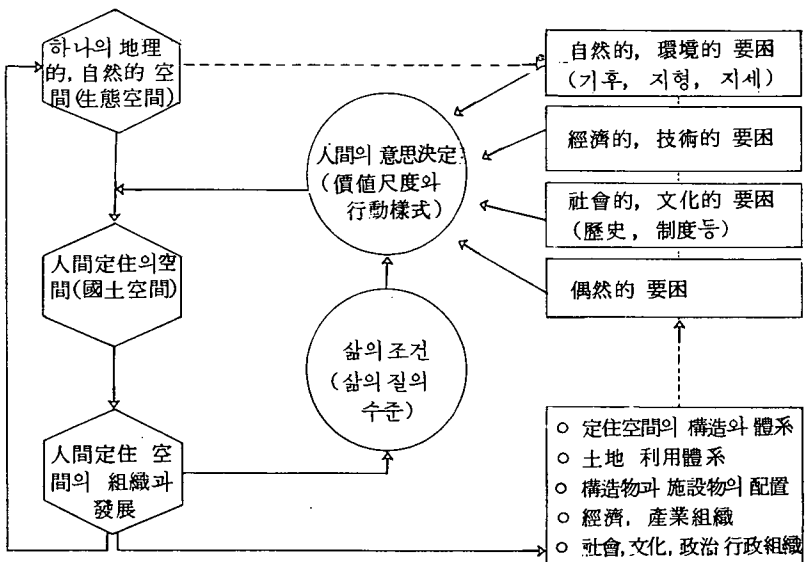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人間中心의 國土認識은 國土와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서로 分離할 수 없는 하나의 유기적으로 統合된 全體로서 온 國民의 삶의 空間 또는 人間定住의 空間으로 파악하는 態度를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과거 우리는 國土 그 자체를 經濟成長을 위한 하나의 手段으로서 人間을 배제시킨 自然으로서의 物理的인 土地나 또는 資源으로 把握하는 態度를 견지해 왔다.

經濟的 觀點에서 國土를 生産要素의 하나인 土地 또는 資源이라고 認識하는 經濟主義的 態度는 經濟成長의 극대화를 위해서 요구되는 <經濟的 效率性>이라는 하나의 가치척도에 따라 國土開發을 추구한다. 물론 이때의 經濟的 效率性은 短期的이고, 私經濟의이며, 사람이 아닌 어떤 開發投資事業이나, 施設, 商品의 觀點에서, 그것도 계량적으로把握이 可能的 範圍內에서 산출된 不完全한 것이다. 經濟的 效率의 觀點에서 資源의 開發利用이 강조되는 國土開發은 國土에 대한 어떤 構造物이나 施設物의 배치가 人間 삶의 樣式이나 行動樣式에 適應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것들의 變化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國土는 國土라기보다는 오히려 物理的 또는 場所의 空間으로 認識된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더욱기 經濟

成長의 觀點에서 人間 자신이 勞動力이라는 또다른 하나의 生産要素, 즉 商品으로 把握되는 經濟主義의 價値尺度에서 보았을 때 國土와 民衆과의 關係는 단순한 場所의 意味에 한정되며, 그것은 일자리와 기회와 施設이 人間들이 定住하는 곳으로 움직이기보다는(그렇게 하는 것이 經濟的으로 非效率的이기 때문에), 오히려 人間들이 기회와 일자리를 찾아서 움직여야 하는 것을 經濟主義는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人間定住의 空間으로서 國土의 意味는 퇴색되며, 그 결과는 經濟的 效率性, 開發投資의 效率性 속에서 正當化되는 規模의 經濟, 집적의 經濟라는 論理에 따라 人口와 富가 몇 개의 特定地域, 즉 大都市라는 <開發의 섬>에 집중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당연한 것으로 經濟主義의 國土認識은 받아들인다.

人間主義의 觀點에서 國土를 認識한다는 것은 國土認識의 主體를 人間으로 設定하고 人間을 中心概念으로 하여 하나의 獨立된 生態系를 가진 自然的, 地理的 空間과 人間の 相互作用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을 國土

圖 3-1 人間定住 空間의 形成과 發展의 一般模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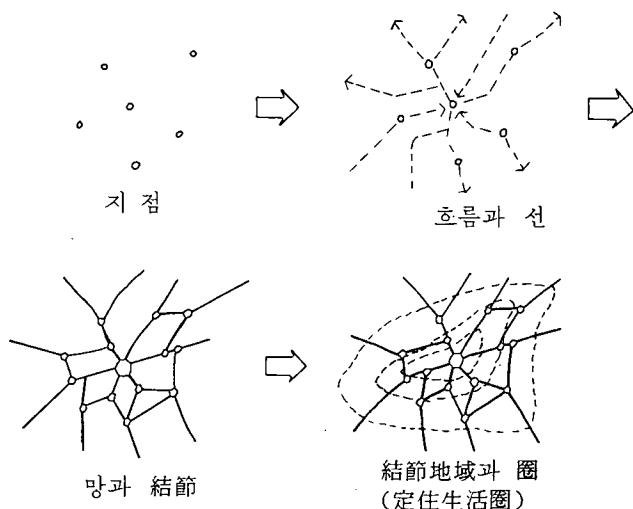
로 把握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國土라는 概念 그 속에는 이미 自然的 空間과 사람의 삶의 樣式, 行動樣式이 함축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어떤 하나의 일정한, 自然的 空間은 그 自體가 고유의 生態組織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自然的 空間은 人間의 價値와 의사가 관계를 맺을 때 人間 定住의 空間이 되며 삶의 條件 또는 삶의 樣式으로서의 國土空間이 된다. 이러한 觀點에서 보았을 때 經濟主義의 國土認識은 自然的 空間과 人間과의 關係를 經濟成長을 위해서 開發되고 利用되어야 할 資源으로서 自然的 空間과 사람이 배제된 開發事業, 예를 들면 特定한 構造物이나 施設物의 設置와의 關係로 맺게 하는 認識이라고 할 수 있다.

人間主義의 國土認識에서 하나의 自然的 空間이 人間과의 만남을 통하여 人間定住의 空間, 國土空間으로 形成 發展하는 關係를 하나의 假設的 模型으로 一般化시키면 <圖 3-1>과 같다. 國土 속에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自然的 空間과 人間은 서로가 影響을 주고 影響을 받는 개방 체계(Kapp, 1976)의 關係 속에서 人間은 自然的 空間 속에 人間の 삶을 위한 定住空間을 組織하고 發展시킨다 (崔洋夫, 1985).

2. 人間定住生活空間의 形成과 定住生活圈

하나의 일정한 自然的, 地理的 空間에 人間들의 集團인 定住가 시작되면서 地表上의 점으로서 마을 또는 취락이 形成되고 이들 地點들간에 흐름이 發生하며, 그 흐름이 持續的인 것이 되면서 흐름은 선이 되고, 다시 그 선들은 하나의 체계화된 망을 形成한다. 선과 선이 만나는 곳에 結節이 만들어지며, 결절들 간의 機能上의 차이가 階層을 形成하고, 높은 階層의 結節이 낮은 階層의 結節과 그 배후지를 지배하는 關係를 맺으면서 하나의 空間은 中心結節을 中心으로 하나의 유기적인 圈을 形成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自然的 空間은 점 → 선 → 권으로 發展되면서 人間定住生活의 空間으로 바뀌어 나간다. 이런 發展過程을 一般化시키면 <圖 3-2>와 같다. 본 報告書는 自然的 空間 속에 하나의 中心結節을 中心으로 形成되는 人間生活의 基本單位의 定住生活空間을 특히 <定住生活圈>

圖 3-2 人間定住生活 空間의 形成과 發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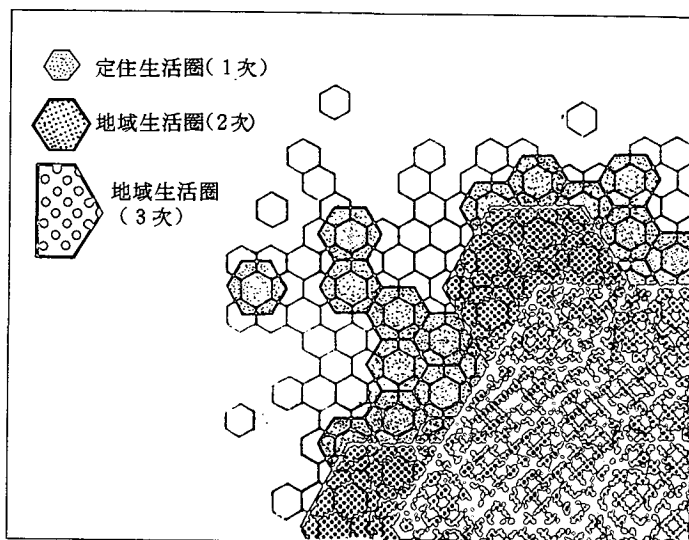


이라 부르기로 한다. 이와 같은 定住生活圈의 中心結節을 中心地라고 할 때 이러한 中心地와 그것이 지배하는 배후지는 하나의 통합된 生活圈域을 形成한다.

國土空間에는 무수히 많은 中心地가 存在하며, 中心地를 中心으로 形成되는 일정한 수의 定住生活圈이 存在한다. 그리고 中心地가 갖는 中心機能의 保有 정도를 意味하는 中心性의 차이에 따라 形成되는 中心地間의 階層構造는 市場原理, 交通原理, 또는 行政原理 등의 包攝原理에 따라 決定된다.

國土空間에 있어서 人間定住의 基本單位가 되는 定住生活圈은 그 속에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日常生活에서 不便없이 그리고 生存의 위협이 없이 安定된 人間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基本需要가 充足되는 一日生活圈을 意味한다. 따라서 모든 中心地는 그곳을 中心으로 일차적으로 形成되는 자체의 定住生活圈을 가지며, 中心地의 차이에 따라 形成되는 2차, 3차의 生活圈(이러한 生活圈을 <地域生活圈>이라 부를 수 있다)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生活圈의 關係를 정리하면 <圖 3-

圖 3 - 3 定住生活圏과 2, 3차 生活圏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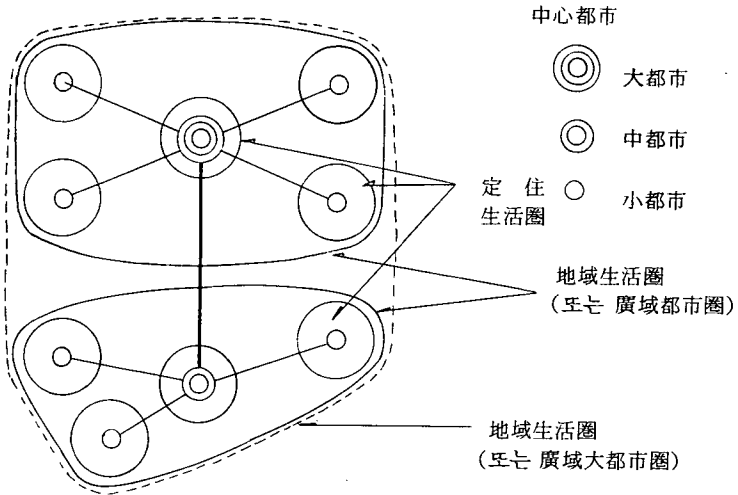


3>과 같다.

여기서 定住生活圏과 地域生活圏과의 空間的 體系를 생각해 본다면, 結節地로서 모든 市와 邑 또는 面所在地를 中心都市로 하는 最小 基本單位의 生活圏을 定住生活圏이라 할 때, 中心都市의 規模와 機能의 差異에 따라 형성되는 地域生活圏을 토대로 그 위에 성립되는 上位의 生活圏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中心都市들이 地域生活圏의 中心地로서 役割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生活圏의 種類와 空間的 범역은 生活圏의 中心地가 되는 市와 邑급 都市의 位階적 體系化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정리될 수 있다. <圖 3-4>는 중심도시의 位階에 따라서 형성될 수 있는 地域生活圏과 定住生活圏을 비교하고 體系化한 것이다 (崔洋夫, 1985).

그리고 定住生活圏 그 자체는 人間定住의 空間으로서 그 속에는 역사와 文化가 있고, 價値와 制度가 있으며, 經濟, 社會, 政治 그리고 行政秩序가 있다는 것을 認識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은 각각의 定住生活圏이 갖고 있는 自然環境의 特性 속에서 그 나름대로의 고유한 개성을 가진

圖 3 - 4 中心都市의 位階와 生活圈의 體系化(構想圖)



삶의 樣式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定住生活圏 間に 存在하는 特性을 地方性 또는 地方的 性格이라 부를 수 있다. 定住生活圏의 고유성에 대한 認定은 곧 獨自性과 自率性에 대한 認定이며, 地方的 다양성에 대한 認定을 意味한다. 그리고 이러한 地方的 다양성을 國土空間의 全體 속에서 통합된 하나를 形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定住生活圏에 대한 認識은 人間中心의 人間主義的 國土認識을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崔洋夫, 1985).

3. 定住生活圏 概念에 의한 國土認識과 地方開發

<定住生活圏>이란 하나의 中心結節, 또는 中心地를 中心으로 形成되는 人間定住生活의 基本的인 空間單位를 지칭하는 말이란 점은 이미 앞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定住生活圏의 概念이 涵攝하고 있는 國土空間에 대한 基本認識을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로 定住生活圏은 國土空間을 經濟成長을 위한 手段으로서의 資源

또는 生産要素로 이해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人間定住의 空間, 또는 삶의 空間으로 把握한다.

둘째로 定住生活圈은 지금까지 慣習의 使用되어 온 都市·農村의 이분법에 의한 分離主義의 國土認識을 비판하고 中心地로서의 都市와 배후지로서의 農村이 하나의 통합된 人間 定住生活 空間이란 統合主義的 國土認識의 입장을 취한다. 이러 한 觀點에서 定住生活圈의 國土認識을 農都統合論이라고 부른다.

세째로 定住生活圈은 人間 定住生活의 基本的인 空間으로서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日常生活에 不便없이 安定된 人間の인 삶을 살아가 수 있도록 하는 基本需要를 充足시킬 수 있는 空間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째로 定住生活圈이 가진 自然的 環境의 特性은 물론 社會的, 文化的 歷史的 特性의 存在를 認定하며, 따라서 그 나름대로의 政治的, 行政的 獨自性과 自率性을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고 인정한다. 定住生活圈의 國土認識이 政治的인 地方分權主義와 行政的인 地方自治主義를 전제로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러 한 觀點에서 定住生活圈의 國土認識을 地方主義라고 부를 수 있다.

다섯째로 定住生活圈은 각각의 中心地간에 形成되는 階層構造를 認定하며, 中心地간의 垂直的, 水平的 統合을 통하여 國土空間의 統合된 定住體系가 形成된다고 생각한다. 이러 한 觀點에서 定住生活圈은 中心地의 性格과 機能, 中心點, 배후지와의 關係에 따라서 都市 定住生活圈 또는 農村 定住生活圈으로 유형화될 수 있다. 이러 한 生活圈의 유형화는 都市·農村의 二分法과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定住生活圈은 人間主義的 國土認識의 一般模型에 따라 人間과 自然과의 關係를 開放體制로 把握하며 自然의 生態組織(ecosystem)을 존중한다.

이상과 같은 定住生活圈의 國土認識은 지금까지의 좁은 한반도를 더욱 좁게 하는 機能主義的이고, 分離主義的이며, 서울中心의이고, 經濟主義的인 國

土認識의 한계를 벗어나 좁은 한반도를 다양한 地方的 特性과 개성을 가진 <넓은 한반도>로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준다는 점에서 큰 意味를 가지고 있다 (崔洋夫, 1985).

또한 定住生活圈의 國土認識은 그것이 國土開發의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여 준다는 점에서 또 다른 하나의 開發單位가 됨으로써 地方的 中小都市와 이들 中小都市를 日常生活의 中心地로 하고 있는 배후지가 자연스러운 統合關係를 形成할 수 있기 때문에 分離主義의이고, 機能主義의인 國土開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定住生活圈은 지금까지의 地方開發에 있어서 孤立的이고 분리적인 都市開發, 小都市開發, 마을開發, 農業開發 등을 통합된 체계속에서 가능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하나의 定住生活圈이 갖는 空間構造의 성격에서 쉽게 理解될 수 있다 (최양부, 정철모, 1985).

定住生活圈에 의한 中小都市와 農村의 통합은 地方開發戰略의 觀點에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接近을 가능케 하여 준다는 점에서 또 다른 重要的 의미를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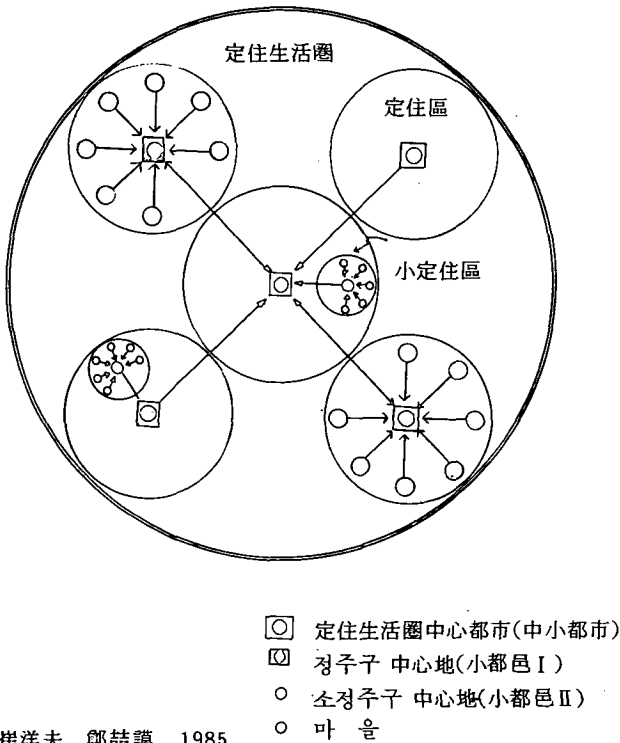
첫째는 定住生活圈을 開發의 基本單位로 할 때 지금까지의 地方的 中小都市와 農村地域의 開發關聯事業이 事業中心 또는 品目中心으로 分散的으로 이루어진 것을 定住生活圈 單位에서 綜合 推進함으로써 地域開發 投資의 效果를 增大시킬 수 있다.

둘째는 定住生活圈을 開發의 基本單位로 할 때 이를 單位로 하는 長期綜合發展計劃의 樹立이 可能하며, 이러한 開發計劃에 의한 計劃的인 地方開發이 可能할 수 있다.

세째는 定住生活圈이 開發計劃의 基本單位로 될 때 地方的 多樣性과 特性, 地方住民들의 開發需要와 開發의 優先順位에 따른 地方住民들의 參與 속에서 밑으로부터의 計劃樹立과 開發이 可能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定住生活圈 開發전략은 밑으로부터의 長期的이고 綜合的인 開發計劃에 基礎한 計劃的인 開發을 可能케 하여 地方發展을 위한 開發投資의 效率性을 增大시킬 수 있게 한다.

圖 3 - 5 定住生活圈의 空間構造



資料：崔洋夫，鄭喆謨，1985

農村開發의 觀點에서 보았을 때 定住生活圈의 概念은 開發單位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마을단위에서 定住生活圈 單位로의 農村의 空間的 範圍의 擴大를 意味하며 지금까지의 農業中心의 開發에서 農村經濟, 社會, 生活環境, 文化등의 綜合的 開發을 意味한다. 따라서 定住生活圈의 유형에서 區分되는 農村 定住生活圈의 경우 定住生活圈 戰略은 바로 <農村地域 綜合開發戰略>이 된다. 그것은 農村 定住生活圈 그 自體가 새로운 <農村地域>의 概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第 4 章

定住生活圈設定에 대한 理論的 接近

1. 傳統的 空間理論

空間은 地域에 따른 相異性, 즉 自然的, 經濟的, 社會的 또는 政治的 諸條件에 따라 分化해 간다.

現代 產業社會에 있어 空間分化는 工業化와 都市化의 進展에 따라 空間上에 適定치 못한 人口配置가 야기됨으로써, 都市의 過密空間과 農村의 過疎空間으로 代表되는 社會空間의 分化和 生産이나 所得의 地域間 隔差에서 야기되는 經濟空間의 分化, 그리고 自然空間에 있어 生態的 收支의 不均衡과 汚染이라는 環境分化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空間分化로 인한 人間定住空間의 不均衡의 發展은 國土利用의 偏在化를 심화시키고 社會的 經費를 加重시켜 人間定住生活에 深刻한 現象을提起해 주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空間分化를 다루어 온 傳統的인 空間理論은 대체로 個人部門의 經濟活動에 대한 空間克服의 側面에서만 고려되어 왔다. 따라서 오늘날 社會의 社會共通資本이라고 볼 수 있는 下部構造의 整備水準이나 人間的 觀點에서 個人的 地域選好性에 注目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現代 産業社會에서 公害問題의 重要性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 비해, 環境問題나 生態的 要因에 대해서도 간과해 왔다.

그럼 여기서 傳統的인 空間分化和 관련된 理論에 대해 좀 더 자세히 考察해 보기로 하자

가. 튀넨의 孤立國

經濟活動의 空間關聯性을 經濟學에 導入해 經濟空間의 均衡理論을 최초로 體系化한 사람은 튀넨(J·H Von Thünen)이었다. 그는 그의 「孤立國 (1826年)」에서 農業土地利用에 대한 分析을 전제된 假定을 中心으로 해서 시작하였다. 따라서 튀넨은 靜的이고 抽象的인 모델을 발전시켰다. 抽象的 모델의 목적은 實在世界의 일부 特性을 理解하기 위해 現實世界를 단순화시키는데 있다 (Anthony R. de Souza & J. Brady Foust, 1979, pp. 116 ~ 194).

그는 복잡한 實在世界를 다음과 같이 단순화시킨 假定을 채택하였다 (M·G Bradford & W·A Kent, 1977, pp. 28 ~ 29).

첫째, 孤立國은 외부세계와는 차단된채 農業地域의 中央에 위치한 단 하나의 都市를 가지고 있다.

둘째, 그 都市는 農業地域으로부터 生産된 잉여 농산물의 유일한 市場인 동시에 農產物의 市場價格은 그 都市에서 모두 同一하다.

셋째, 農業地域은 토양의 비옥도, 기후, 그리고 다른 모든 自然的 要因이 等質的인 平原이다. 그리고 그 平原을 횡단하는데 있어 어떤 自然的 장애물도 없다.

네째, 모든 農民들은 經濟人으로 행위한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利潤 極大化를 目的으로 하며 市場需要에 대한 完全한 知識을 가지고 있음을 意味한다.

다섯째, 交通路는 오직 하나의 形態뿐이며 (그 당시는 마차), 이것의 운송비는 距離에 직접적으로 비례한다.

以上과 같은 假定을 前提할 때 다음과 같은 問題가 提起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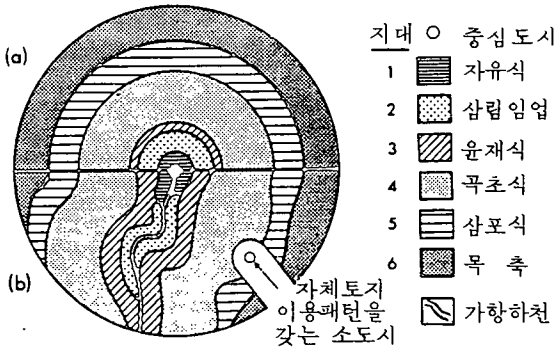
첫째, 農業의 耕作패턴은 어떠한 형태로 일어날 것인가 ?

둘째, 農業이 合理的으로 經營될 때 都市로부터 距離에 따라 어떤 作用을 나타낼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孤立國에서는 이미 人口가 集中되는 大都市에서의 價格과 農村의 農產物 生産費가 이미 규정지어져 있기 때문에 農業生産의 立地構造를 나타내는 要因은 輸送量の 크기만큼 남게 된다. 따라서 都市近郊에는 輸送費의 負荷가 높은 經營방식이, 그리고 遠郊地가 되면 될수록 輸送費가 낮은 經營방식이, 利潤의 最大化를 나타낸다. 따라서 孤立國의 靜態의인 前提를 基반으로 보면, 土地自體에서 發生하는 純利益, 즉 地代의 最大化로 農業의 經營方式이 나타나게 되어 6個의 圈이 形成된다<圖 4-1>.

以上에서와 같이 傳統的 經濟理論에서는 일반적으로 個別 經濟的 觀點과 社會全體의 觀點, 모두에게 土地利用의 가장 적절한 方法을 유도할 수 있는 調整機能을 地代와 土地價格의 作用에서 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러한 地代理論은 土地利用의 空間構造의인 外部의 側面을 결여하고 있는 점이 理論의 결 함이다. 그것은 個別的인 土地利用의 外部效果의

圖 4-1 튀넨의 모델



資料 : M·G Bradford & W·A Kent, 1977. p. 34.

要因에 대한 認識의 不足에 기인한다. 經濟主體에 의해 나타나는 土地利用에서 空間構造的 側面은 다른 經濟主體와의 사이에 外部經濟가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또한 그것에 의해 土地利用의 空間分化가 일어나므로, 地代에 의한 土地利用의 調整機能에는 결함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이 地代는 市場메카니즘이 갖는 立地最適化의 作用에는 私經濟活動에 동반해서 나타나는 外部效果의 存在有無에 따라 限界가 나타난다. 더우기 資源의 適定配置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外部效果가 전혀 나타나지 않거나 같을 때이고, 또한 市場메카니즘이 完全한 경우이다. 그러나 實在에 있어서는 같은 位置가 아닌 곳에서 영위되는 個個의 土地利用者相互間에는 相異한 정도의 外部效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 立地에서 地代는 각각의 土地利用에 있어 土地의 生産的 기여를 不完全하게 또는 部分的으로 反映하는데 불과하고, 그러므로 이로 인한 土地利用의 空間分化는 일어나기 마련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個別的 土地利用에 동반해서 야기되는 外部效果의 種類와 程度는 일반적으로 國家나 公共團體에 의한 土地利用計劃의 方向과 그것에 기초해서도 나타난다. 따라서 空間利用計劃과 下部構造에 따른 要因도 土地利用의 空間分化要因으로 重要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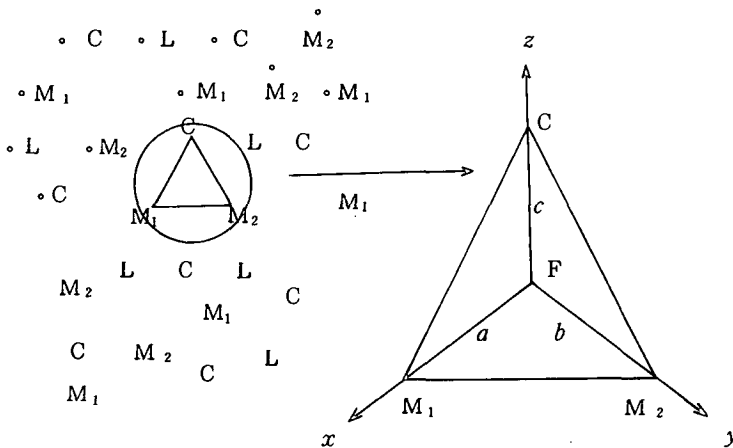
나. 베버의 立地三角形

튀빈의 農業立地論을 工業部門에 적용시켜 研究를 발전시킨 사람은 베버(A. Weber ; 1909年)였다. 그의 주요 관심은 空間全體에 대한 市場메카니즘에 의한 資源의 最適配置에 두고서, 全體的 觀點과는 다른 個別企業의 立地에서 最適立地를 구하려고 하였다.

베버(Weber)에 의하면, 立地要因의 一般的 因子로 輸送費, 勞動費, 原料費를 들고 있다. 여기서 原料費는 工業立地論이 갖는 特有한 因子라 할 수 있다. 그것은 工業이 본래 어떤 原料를 가공하여 제품화하는 産業이고, 그러므로 地理的인 原料의 局地限定性이라는 점에서 農業立地論이나 都市立地論과는 다른 前提이다.

베버의 工業立地論에서는 企業이 消費地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費用을 最小化하는 立地를 구한다. 즉, 輸送費가 운반할 貨物의 重量과 距離에 比例한다고 가정하면, 生産過程 및 販賣過程 모두에서 運搬費用의 合이 最小化되는 運搬費 最小地點, 즉 企業의 最適立地地點은 立地三角形이라 부르는 立地圖形을 통해 구할 수 있다<圖 4-2>.

圖 4-2 베버의 입지삼각형



C = (소비지점)
 M_1 = (원료산지 1)
 M_2 = (원료산지 2)
 L = (값싼노동력지점)

資料 : David M. Smith, 1981, p. 71.

베버의 工業立地論에서는 立地要因으로 이미 集積을 논하고 있다. 그리고 個別的인 集積의 內部效果, 즉 規模經濟는 소위 社會의 集積으로서 外部效果의 要因으로 指適되고 있다 (David M. Smith, 1981, pp. 65-75).

그러나, 立地要因分析에서 厚生經濟學的인 全體的 觀點에서 最適立地를 구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다. 뢰쉬의 經濟景觀 理論

베버 모델에서 시작하여 經濟空間의 要素를 導入하고 私經濟活動의 空間均衡의 問題를 해명한 것은 크리스탈러(W. Christaller; 1933 年)와 뢰쉬(A. Losch; 1940 年)였다.

뢰쉬는 그의 모델에서 튀넨과는 달리, 人口(購買力)의 地理的 均等分布와 資源 및 輸送 諸條件을 空間上에서 均等分布한다고 前提하였다. 이러한 前提에 앞서 經濟主體間的 相互競爭의 結果, 經濟活動은 正六角形의 市場圈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하였다. 空間均衡의 條件은 需要變數와 費用變數의 均衡에 의한 財貨의 도달범위이고, 그것은 市場圈이 일정한 需要를 만족시키기 위한 最適의 經營規模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따라서 뢰쉬모델에서는 集積의 內部經濟, 즉 規模經濟가 立地要因으로 특히 重視된다.

뢰쉬는 이러한 網狀市場圈이 空間均衡의 狀態에서 어떠한 형태로 空間分化가 일어나는지를 보았다. 여기에 대한 대답에 앞서 空間的 差異는 왜,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답해야 한다. 우선 人口, 資源, 輸送의 諸條件을 等質이라고 前提하고, 또한 規則的으로 均等한 分布를 나타내는 農業 以外の 生産者는 存在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어떤 農業生産者의 單一市場圈을 형성하는 메카니즘을 나타낼 수 있다 <圖 4-3 및 圖 4-4>.

圖 4-3 需要曲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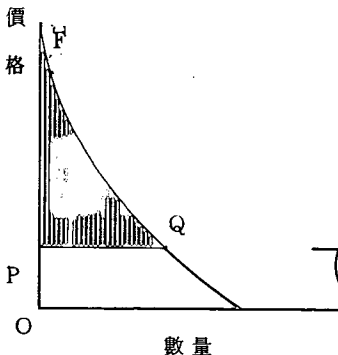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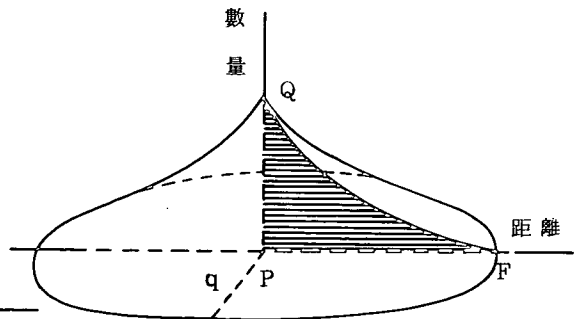


圖 4-4 需要內維와 單一市場圈



資料 : 相川哲夫, 1984, p. 85.

만약, 工業을 고려해서 어떤 농부가 自給以上の 어떤 工產品, 예를 들어 맥주를 판매한다면, 그것의 市場規模는 大量生産에 의한 費用의 內部節減部分과 점차 增加하는 輸送費의 손실部分의 差異에 의해 결정된다.

<圖 4-3>는 그러한 商品 (여기서 맥주)의 需要曲線이고, OP가 工場에서의 인도가격이라면, P의 거주자는 PQ量만큼 맥주를 購入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距離가 멀어지면, 價格은 그곳까지의 運搬費用만큼 上昇하게 되고 需要는 그것만큼 減少하게 된다. F地點에서 運搬費는 PF가 되고 맥주는 전혀 팔리지 않게 된다. 따라서 PF는 맥주의 最長の 販賣半徑(q)이고, 이 地域의 全販賣量은 PQ를 축으로 해서 PQF를 회전시켜 얻은 円錐의 體積과 同一하다. 그리고 그것의 單一市場圈은 q 를 半徑으로 하는 円形으로 나타난다. <圖 4-4>

다른 한편, 모든 農業者가 같은 販賣活動을 행한다고 한다면, 空間內에 같은 형태의 円形을 이룬 여러 個의 單一市場圈이 成立된다. 그리고 그것은 結局 모든 人口에 대해 需要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正六角形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될 때, 地域全體의 需給은 最適의 均衡狀態를 이룰수 있게 된다 <圖 4-5 및 圖 4-6>.

以上에서는 同一한 等級의 財貨와 관련된 것이지만, 生産의 專門化에 의해 各種의 相異한 等級의 財貨에 대한 市場圈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樣相은 나타난다. 즉, 크고 작은 六角形의 網들이 相互 겹쳐질 경우, 1次 中心地에 중복되어 集積이 일어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러個의 市場圈의 中心地에 重複되어 都市를 形成하게 되고 그래서 地域全體로 보면 大都市와 그주변에 中都市, 小都市 등으로 求心的인 階層構造를 가진 市場圈을 나타내어 經濟空間의 分化가 발생한다.

圖4-5 網狀市場圈의 形成過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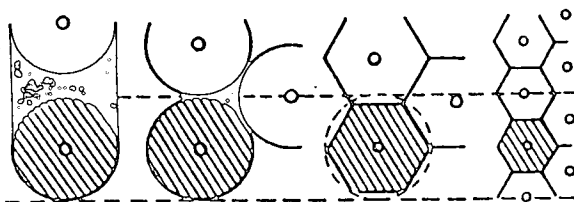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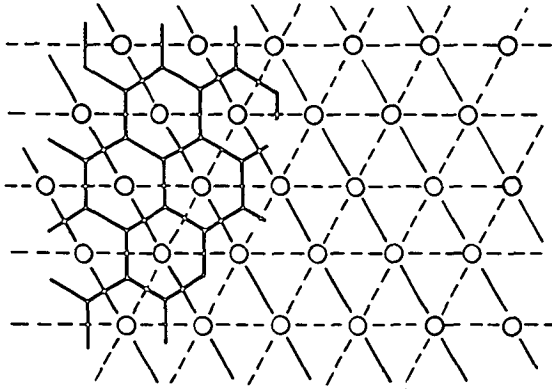


圖 4-6 網狀市場의 空間形成



이러한 地域體系를 일컬어 띄쉬는 經濟景觀 (Wirtschaftslandschaft) 이라고 하였다(相川哲夫, 1984).

라. 크리스탈러의 中心地 理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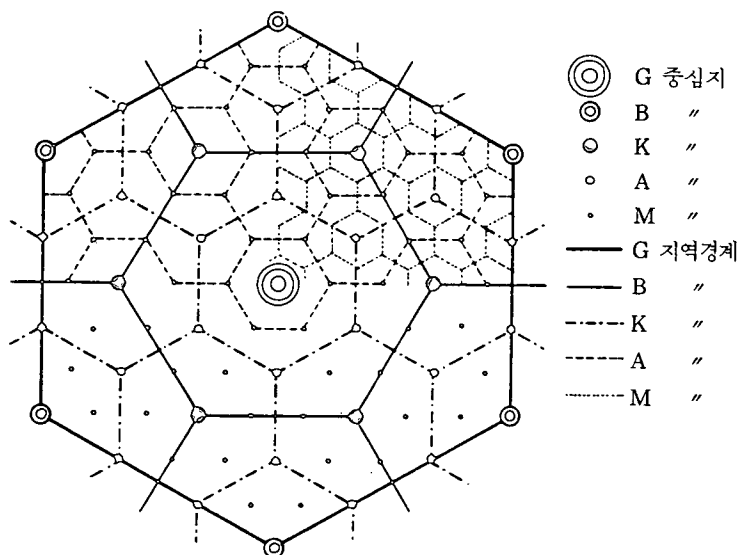
크리스탈러의 中心地 理論은 띄쉬모델과 같이 自然과 交通 條件, 그리고 人口分布가 均等한 等質空間을 前提하였다. 그리고 都市의 數나 規模 및 그 分布를 규정하는 法則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는 3次産業을 中心으로 定住空間構造의 規定要因을 中心財와 서비스의 供給機能, 즉 中心機能에서 구하고 있다. 經濟活動이 集積한 中心地는 正六角形을 나타내며, 그것은 각각의 中心性の 단계나 中心機能이 相異하므로 階層的인 體系를 形成하면서 空間적으로 分化한다 <圖 4-7>.

中心地 理論의 基礎를 이루고 있는 都市의 財貨와 서비스를 供給하는 中心地와 中心機能에 대한 分析은 定住空間構造와 그 分化의 메카니즘을 밝히는데 있어 획기적인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都市立地論이라는 觀點뿐만 아니라 農村地域에 있어서도 農村地域의 1次 中心聚落;.....등과 같이 農村地域의 階層的인 定住空間構造를 밝히는 데에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理論의 前提가 되고 있는 人口의 均等分布, 즉 購買力の

圖 4 - 7 中心地의 階層體系



資料 : M · G · Bradford & W · A · Kent , 1977. p, 13.

地理的 均等分布에 대한 假定은 小農體制로 定住하는 農業社會에서는 分業과 集積利益이 支配하는 工業化 社會에서 人口의 大都市集中이 일어나는 것과는 다를 것이고 理論의 適用에도 歷史的 限界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工業生産이 支配하는 空間에서는 專門化와 集積利益은 決定的인 立地要因이 될 것이다. 따라서 過密空間으로서의 大都市發生이나 또는 中心機能이 동일한 경우에도 그 中心地 相互間에 어떤 종류의 分業은 일어날 수 있고, 生産도 專門化할 수 있기 때문에, 現代의 多極化된 空間分화를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더우기 生産立地가 定住構造를 규정짓고 있는 것이 工業化 社會의 現實이라면 六角形의 空間構造는 成立되기가 어렵다.

그러나 또다른 한편으로는 後期 産業社會에 접어들면서 第3次 産業의 就業人口가 增加하고 工業의 地方分散으로 立地移動이 일어나며 工業立地와 定住中心地間의 分離傾向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中心地의 機能

에서도 多極化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點에서 中心地理論은 再吟味해 볼 만한 價値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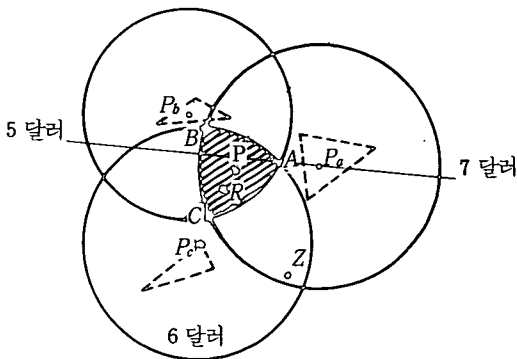
마. 아이자드의 空間經濟理論

立地構造를 규정하고 空間分화를 수반하는 要因으로 輸送費나 市場메카니즘의 立地要因外에 集積經濟와 不經濟라는 費用의 外部節減의 問題를 직접적으로 채택하여 논한 사람은 아이자드(W. Isard; 1956년)였다(David M. Smith, 1981).

아이자드는 그의 「立地와 空間經濟」에서 튀넨에 의한 空間全體로서의 資源配分機構와 베버의 個別企業의 立場에서 立地要因으로 指適되는 非價格機構로서의 外部節減에 대한 理論을 結合시키려고 시도하였다 <圖 4-8>.

튀넨理論은 全體의인 分析에 限定되어 있고, 地域全體에 있어 農業生産의 配分이 문제가 된다. 여기서는 個個의 生産者가 왜 特定の 場所에 立地하는가에 대한 立地問題는 고려되지 않는다. 즉, 個個의 生産

圖 4-8 集積可能地域



資料 ; 相川哲夫, 1984, p. 90.

者는 영구히 移動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베버理論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個個의 企業立地가 問題가 된다. 그러나 베버理論에서도 地域全體에 있어 各種 工業生産의 空間配分에 대한 問題는 기피하고 있다. 따라서 實際의 경우, 農業生産者는 完全히 移動할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立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튀넨理論은 農業生産者의 行動을 충분히 說明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베버理論도 地域全體에 대한 工業計劃에 있어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이러한 튀넨理論과 베버理論을 아이자드는 하나로 統合시켰다. 그것의 理論의인 도구로는 空間關聯의인 集積因子이다. 이러한 空間關聯의인 集積因子를 아이자드는 첫째, 單一地點, 同一企業內에서의 規模經濟(內部經濟效果) 둘째, 同一業種의 諸企業이 같은 團地內에 立地함으로써 얻는 生産增加나 費用節減의 外部經濟(地域化效果) 셋째, 多種業種이 같은 團地內에 立地함으로써 얻는 生産增加나 費用節減 즉, 異種部門의 集積效果에 의한 外部經濟(都市化效果)의 셋으로 區分하였다.

이 외에 集積因子로 들 수 있는 것은 情報效果나 技術進步에 關한 效果, 多種多樣한 熟練勞動市場의 存在등으로서, 이러한 것들은 都市化效果라고 할 수 있다.

以上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아이자드의 理論은 콕쉬모델에서 外部節減에 대한 理論을 導入하고, 여기에 베버의 立地論에서 外部節減을 2個 種類로 區分함으로써 空間分化에 대한 메카니즘을 한층 더 發展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傳統的 立地論에서 最適立地の 決定은 市場合理性의 觀點에서 주로 行해져 왔다. 여기에 비해 아이자드의 立地論은 集積이라고 하는 空間經濟理論을 驅使해서, 全體의인 立場에서 計劃合理性和 厚生最大化의 觀點을 가지고 最適立地를 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도 地域이 歷史의으로 오랫동안 보유해 온 物的 施設物등에 대한 質的인 問題가 고려되지 못하였다.

일반적으로 立地構造를 규정하는 중요한 歷史的 要因으로는 土地條件이

나 原料, 交通條件과 自然的 基盤條件, 그리고 住民의 制度的·社會的 基盤條件 및 歷史的으로 形成되어 온 地域이 가진 下部構造, 例를 들면 道路, 水利施設, 農地의 耕地整理狀態등이 있다. 이러한 歷史的 遺産으로서 下部構造는 土地結合的이며 私經濟活動에 미치는 影響이 累積的일 뿐만 아니라 重要的 空間分化的 要因이 된다. 그리고 自然景觀과 快適한 居住環境, 地域社會에서의 人間關係 등도 現代 產業化 社會에 있어서는 중요한 定住條件이 되고 있다.

따라서 現代 產業化 社會에서는 地域空間을 단순히 經濟空間으로만 認識하려는 것은 實在世界를 파악하는데 극히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現代社會의 空間理論은 私經濟活動에 수반하는 外部效果에 대한 重視와 함께 超市場經濟的인 社會的 價値에 대해서도 認識하여야 한다. 그리고 生態的인 問題 역시 重要도가 날로 增加하고 있다. 結局, 全體的이고 總體的인 立場에서 人間다운 生活이 영위되는 人間定住의 空間에 대한 基本的인 認識이 必要하다. 그래서 人間生活에서 生産, 消費, 生活의 場이 조화롭게 整備된 그리고 삶의 質과 機會가 보장되는 人間 定住의 生活空間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傳統的인 空間理論은 人間定住의 空間이라는 點을 認識하지 못한 데에 가장 큰 결함이 있다.

2. 地域計劃上的 圈域

地域計劃에서 圈域設定은 計劃의 具體的인 對象地域에 대한 空間的 範域을 設定하는 것을 의미하며, 範域設定 그 自體가 計劃의 基本條件이 된다. 또한 圈域設定을 통해 地域計劃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 圈域의 空間範圍內에 있는 모든 空間構成의 要素들에 대해 秩序를 나타내고자 하는 作業이다. 즉, 地域이 담고 있는 사람과 物資, 그리고 情報등의 一定한 關係를 空間的 單位에 統合·整備하려는 意圖를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地域計劃은 變化하는 人間の 生活活動과 空間單位를 一定한 方向으로 全體的인 體系를 잡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그 基本原理는 空間單位的 統合된

秩序的 關係의 表現이다. 따라서 圈域은 地域計劃에서 有效한 部分을 차지하며 매우 重要한 概念이다 (吉阪隆正外, 1980).

計劃的 圈域은 計劃의 目的이나 立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나 대체로 實在하는 地域의 與件을 바탕으로 對象化되는 圈域이다. 實際에 있어서, 地域을 分析하고 計劃하는 過程에서 計劃的 圈域을 設定하는 경우, 實在 地域의 狀況과 計劃目的에 따라 計劃者의 구상이나 판단이 모두 포함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提示되는 計劃的 圈域에는 問題意識을 바탕으로 實在하는 地域의 實態를 客觀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경우와 特定の 目的에 기초해서 圈域을 設定하려는 경우로 區分할 수 있다. 그러나 計劃的 圈域에 포함된 主觀的 意圖도 實在地域의 客觀的인 認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相互關聯性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 計劃的 圈域의 設定

計劃的 圈域의 設定에서 고려되어야 할 共通의인 것으로는 첫째, 空間上의 諸地域活動을 特定한 空間範圍, 즉 空間單位에 統合시켜 나타내어야 하고 둘째, 空間單位의 統合에는 中心과 周邊 그리고 그것의 境界, 이 3가지 要素를 하나로 통일시켜 나타내어야 하며 셋째, 空間活動이나 空間構造를 위의 3가지 要素들의 相互關係로 說明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圈域의 設定은 人間定住의 生活活動空間, 즉 具體的인 生活空間이 갖는 非等質性이나 그것의 境界를 圖式的으로 나타내는 것이 重要하다. 즉, 主體의 行動이나 相互作用의 結果로 對象化된 地域要素를 어떤 目的을 바탕으로 操作·選擇하여 指標化하고, 그것에 따라 地域空間을 區分하여야 한다 (吉阪隆正外,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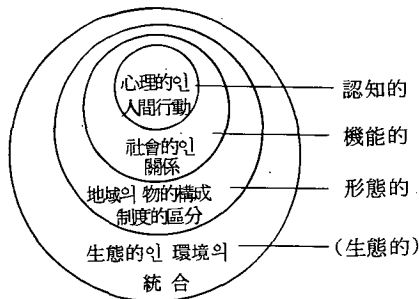
圈域의 形態는 等質地域과 結節地域이라고 하는 地域空間에 대한 2個의 觀點에 따라 다르다. 等質地域은 어떤 目的이나 指標과 관련하여 等質的 構造를 갖는다고 생각되는 空間으로서, 單位地域의 境界設定에 중요한 개념이다. 여기에 反해 結節地域은 中心地域과 周邊地域이 機能的으로 하나로 統合되어 相互補完의 關係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空間으로서, 그것

의 區分은 中心機能이 갖는 求心力과 遠心力의 力動的인 關係에 따라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行政活動에서 地方自治團體를 하나의 독립된 單位로 판단한다거나, 山間地·中間地·平野地등과 같이 自然的 基盤에 의한 區分을 하는 것은 等質地域에 의한 區分이라 할 수 있고, 都市를 中心으로 周邊農村地域에 대한 財貨나 서비스의 交換등을 中心으로 볼 때는 結節地域에 의한 區分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計劃的 圈域의 設定에서는 다음의 4가지 要因을 고려해야 한다 <圖 4-9>.

첫째, 心理的인 人間行動과 관련된 認知的 要因이다. 이것은 하나의 個

圖 4-9 計劃的圈域을 규정하는 4가지 要因



資料 : 吉阪隆正外, 1980, p. 54.

人을 中心으로 볼 때, 外部世界와 관련되는 것으로써, 日常의 生活活動이나 物的 構成에는 意味있는 空間關係를 나타낸다. 즉, 이것은 直接的인 知覺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安定된 空間에 대한 이미지로서 個個의 生態的 屬性이나 社會文化的 屬性(規範, 慣習 등)에 기초해서 日常的인 行動이나 生活樣式이 규정된다.

둘째, 個人 또는 單位集團의 社會的인 相互關係로서 地域空間에는 一定

한 空間的 統合을 나타내는 生産·流通·政治·文化 等の 社會的 機能이 있다. 이러한 機能들간의 關係는 한 地域社會內에서 相互 結合要因이 될 수도 있고, 分離시키는 要因으로 作用할 수도 있다. 따라서 時·空間上에서 이와 같은 社會的 機能이 空間의 形成에 미치는 影響을 考察해야 한다.

셋째, 山·江·平野 등의 自然地形이나 聚落의 形態, 交通路와 같은 物理的 環境이나 制度的 區分으로서의 地域區分이다. 이러한 物理的 環境은 그것 自體의 形態의 構成에 의해 景觀으로 表現되며 一定한 圈域으로 나타난다. 制度的 地域區分은 制度圈(行政區域, 統計區域等)을 의미하지만, 計劃의 對象地域이 되면 計劃의 圈域이 된다.

네째, 統合된 單位地域을 그 全體的인 그 地域의 自然機能과의 關係에서 檢討하는 일이다. 다양한 地域活動이 그 地域의 自然環境에 不可逆的의 負荷로 因해 地域의 生態의 週期를 파괴하지 않는 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地域의 環境計劃은 實在地域空間의 生態의 單位에 일치시켜 統合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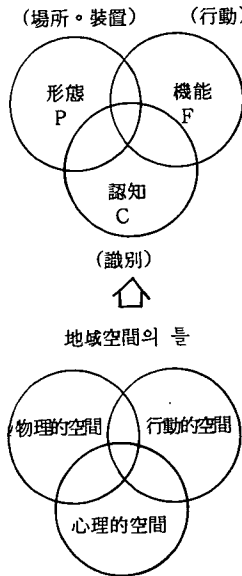
나. 計劃의 圈域의 特性

計劃의 圈域은 前述한 構造要因들로 인해 形態의 特性, 機能의 特性, 認知的 特性의 3가지 特性으로 나타난다 <圖 4-10>.

이러한 特性들은 각기 物理的 空間, 行動의 空間, 心理的 空間을 構成하면서 全體的으로 物理的 環境에 基礎하게 된다. 그리고 그 어느 것도 靜態的인 것은 없으며 모두 動態的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計劃의 圈域을 구성하는 要素들은 抽象化시켜 나타낼 수 있다. 대체로 이러한 要素들은 點, 線, 面으로 表現될 수 있는데, 職場이나 居住地등은 點으로 나타낼 수 있는 施設에 해당되며, 이러한 點의 施設들간의 關係를 나타내는 生活活動은 線의 活動으로 간주되고, 이러한 線의 活動이 一定한 程度로 分布하고 있는 地域範圍를 面的 空間으로 區分한다.

圖 4-10 計劃的 區域의 3 가지 特性



資料：吉阪隆正外，1980，p. 56.

3. 定住生活圈 設定의 前提

國土空間上에는 수 많은 中心地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周邊地域이 하나의 地域單位로 統合되어 形成하는 定住生活圈이 무수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定住生活圈은 각기 서로 긴밀한 機能的인 연계를 맺고 있다.

그렇다면 定住生活圈의 設定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우선 問題가 되는 것은 定住生活圈의 空間的 範域이다. 다행히 이것에 대한 空間的 範域에 대해서는 대체로 中心都市를 中心點으로 하여 半徑 16 km (4 里) 內외의 크기에 國內學者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朴柄柱外, 1981 ; 柳佑益, 1982 ; 崔洋夫, 1982 ; 崔相哲, 1982). 이러한 規模에 의견이 모아지는 것은 이것이 대체로 현재의 行政的인 郡

規模에 해당되어 行政的 便宜性을 가질 수 있는 利點外에 모든 韓國人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觀念的인 距離로서도 부합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傳統的으로는 1日往復의 通行圈이고 自動車時代에 와서는 通勤圈으로서 人間의 生理的 週期에 무리를 주지 않는 적당한 거리이다. 또한 이러한 空間的 範圍는 現實的으로 自然地理的 背景이나 中心都市에 해당되는 邑級 以上の 都市分布에 있어서도 適合한 것으로 생각된다.

以上과 같은 空間的 範域을 기초로 해서 定住生活圈을 설정하기 위해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그 境界設定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等質地域의 空間을 비슷한 形狀과 크기로 單位를 區分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全體空間을 빈틈없이 같은 圖形을 가지고 모두 나타낼 수 있는 圖形으로는 圓形, 正三角形, 正四角形, 正六角形등을 생각할 수 있다. 만약 여기서 다른 圖形, 예를 들어, 正八角形을 생각해 본다면 빈틈이 생겨서 위의 條件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 그리고 圓形도 外接하게 되면 같은 結果를 초래해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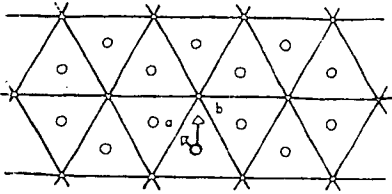
따라서 위의 條件을 만족시킬 수 있는 圖形으로는 正三角形, 正四角形, 正六角形이 남는다. 이것을 서로 비교해 보면, 中心地와 週邊地域間의 平均 移動距離가 가장 적게 나타나서 基本條件을 가장 滿足시키는 圖形은 正六角形임을 알 수 있다 <圖 4-11>.

그러므로 等質空間을 유사한 形狀으로 區分하기 위해서는 正六角形의 形態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리고 定住生活圈間에 빈틈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 가까운 距離에 接近하기 위해 圓形을 취한다고 해도 같은 結果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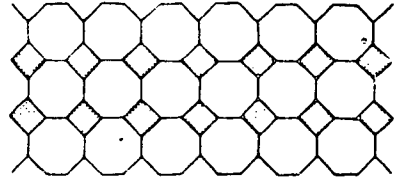
그러나 그러한 패턴은 完全히 모든 條件이 同一한 等質空間일 경우에 한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完全한 等質空間이 아닐 경우는 여러 가지의 다각형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定住生活圈의 空間範域도 모든 地域에 一率的으로 16 km를 適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地域與件에 따라 융통성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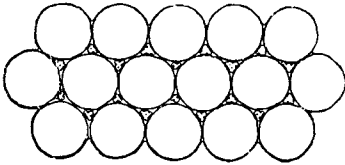
圖 4-11 正六角形패턴의 形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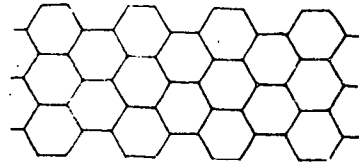
正三角形 : 중심지로부터 不等距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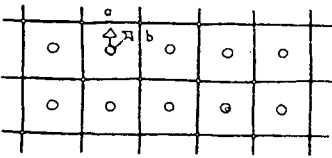
正八角形 : 중심지간에 포함되지 않는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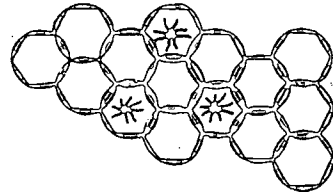
원 : 중심지간의 포함되지 않는 지역



正六角形 : 보다 滿足한 條件



正四角形 : 중심지로부터 不等距離



만족한 條件을 유도하는 正六角形

資料 : Constantions A·Doxiadis, 1968.

그렇다고 하더라도 計劃的 圈域을 設定할 경우에 그 基本原理는 確立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本 研究에서는 空間的 範域을 16 km의 半徑으로 하고, 形狀은 正六角形의 圖形을 채택하여 定住生活圈 設定의 理論的 準據로 삼기로 한다.

第 5 章

定住生活圈의 設定

1. 設定基準과 方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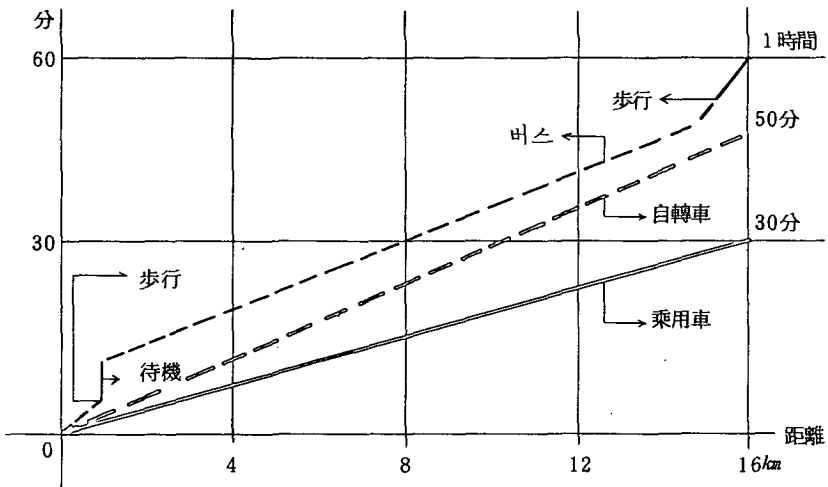
定住生活圈은 中心都市와 背後農村을 分離시키지 않은 하나의 統合된 地域組織으로 把握하고,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地域住民들이 그들의 日常生活을 不便없이, 그리고 安定된 生活이 되도록 그들의 基本需要를 可能的 最少距離에 位置한 中心地로부터 充足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定住生活圈의 設定基準에서 가장 基本的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中心地의 選擇과 適合한 活動半徑의 選擇이 重要하다.

여기서 中心地의 選擇은 國土空間에 位置하고 있는 市·邑·面所在地를 모두 對象으로 하였으나, 대체로 현재의 郡廳所在地나 과거의 郡廳所在地였던 邑이나 市를 一次的으로 選定하였다. 그리고 새로이 만들어진 定住生活圈에서 中心機能이 강하게 나타나는 面所在地를 2次的으로 選定하였다.

定住生活圈의 半徑은 現在の 郡規模가 대체로 16 km의 半徑을 갖는 空間的 範域으로 되어 있고, 모든 韓國人의 觀念속에 出身이나 故鄉을 郡의 명칭을 따라 대답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점

을重視하여 16 km를 半徑으로 採擇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또한 이 거리는 乘用車를 利用할 경우 30分 程度의 時間距離이고, 버스를 利用할 경우 待機나 步行時間을 합해 1時間 程度의 時間距離에 해당되므로 人間의 生理的 週期에 무리를 주지 않는 適當한 距離로 判斷되었다 <圖 5-1>.

圖 5-1 定住生活圈 設定에서 16 km半徑을 設定한 理論的 根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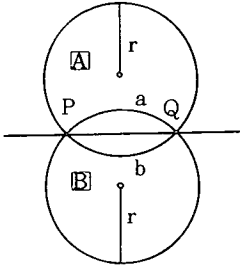


定住生活圈의 設定方法은 우선 選定된 中心地를 中心으로 選擇되어진 16 km를 半徑으로 하는 圓을 그리고 重複된 部分은 中間點을 취해 直線으로 連結하였고, 圓에서 떨어져 포함되지 않고 있는 地域은 새로운 中心地를 추가로 選定하고 같은 方法을 적용하여 圖式的인 區分을 1次로 行하였다.

圖式的인 區分方法은 다음 그림과 같은 方法에 따라 이루어졌다(朴炳柱外 1981, pp. 20 ~ 22) <圖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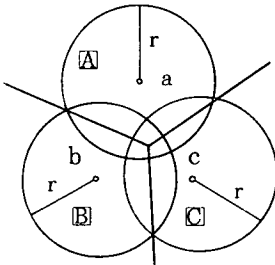
圖 5 - 2 定住生活圈의 圖式的 区分方法

類型 1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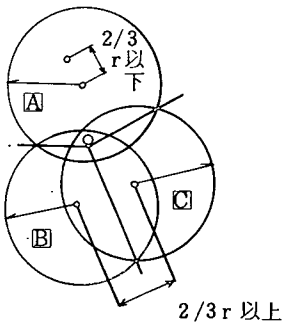
A와 B가重複되는 部分은 P·Q를
連結하여 分割하고 a는 A, b는 B
의 範域에 屬하게 함.

類型 1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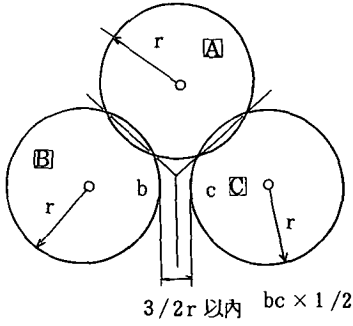
A, B와 C가重複되는 部分은 類型
1 - 1과 같은 方法으로 分割하고 a
는 A, b는 B, c는 C의 範域에 屬
하게 함.

類型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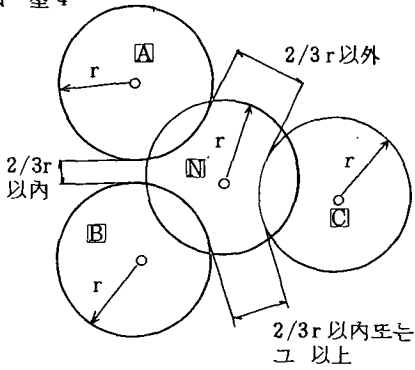
$2/3 r$ 以內는 上位都市를 中心으로
圈域을 設定하고(下位都市는 上位都
市에 吸收) $2/3 r$ 以上이면 獨立시
켜 새로운 圈域中心으로 設定.

類型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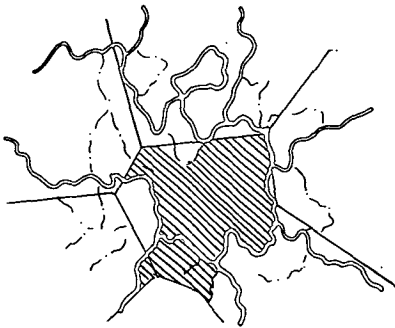
$2/3r$ 以内의 경우는 圖示의 O. P와 같이 $bc \times 1/2$ 로 함.

類型 4



A. B. C가 떨어져 있는 경우는 새로운 N을 新設함.
(다만 圖示의 $2/3r$ 以上인 경우)

類型 5



類型 5. 地形, 河川流域, 道路網을 考慮한 行政區域線을 따라 圈域 境界線을 調節.

2. 定住生活圏의 設定

定住生活圏의 設定은 中心地의 選定과 選定된 中心地를 中心으로 16 km의 半徑을 채택하여 위에서 例示된 方法에 따라 設定하였다. 그것의 設定 節次를 要約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圖式的 區分方法에 따라 中心地를 중심으로 한 半徑 16 km의 圓을 그린다.

둘째, 例示된 區分方法에 따라 作圖하여 多角形 모양의 圖式的인 圈域을 設定한다.

세째, 圖式的인 圈域을 行政區域, 山界나 水界 등의 自然的 背景, 交通路 등의 現實的인 地域與件을 고려하여 境界線을 調整함으로써 定住生活圏의 試案을 마련한다.

네째, 마련된 定住生活圏의 試案을 全國 50 個 市와 139 個 郡에 公文으로 그 內容을 발송하여 設問하고, 그 회수된 內容에 근거하여 定住生活圏의 圈域을 調整하였다.

다섯째, 調整된 內容을 中心으로 定住生活圏의 境界線을 다시 수정·보완하고 不合理한 圈域을 統·廢合하는 節次를 거쳐 定住生活圏의 圈域을 確定한다.

以上과 같은 定住生活圏의 設定節次에 따라 中心地를 中心으로 하는 16 km의 半徑을 作圖하고 <圖 5-3>, 그것을 圖式的 區分方法에 따라 圖式的인 圈域을 區分하였고, 그 區分에 따라 設定된 圈域數는 164 個로 나타났다 <圖 5-4>. 圖式的 區分方法에 의한 圈域을 다시 行政區域, 自然的 背景, 交通路 및 現實的인 住民生活를 생각한 地域의 現實與件을 고려하여 境界線을 調整하여 定住生活圏의 試案을 마련하였다 <圖 5-5>. 이 試案에 따른 圈域數는 圖式的인 區分圖에서와 같은 164 個였다.

定住生活圏의 試案內容은 全國 市·郡에서 회송되어 온 內容에 근거하여 다시 部分的인 境界를 調整하였다 <圖 5-6>. 調整된 內容은 <表 5-1>과 같다. 이렇게 해서 調整된 內容을 基礎로 하여 다시 境界線을 수정·보

圖 5 - 3 中心地 認定 및 圖式的 区分을 위한 作業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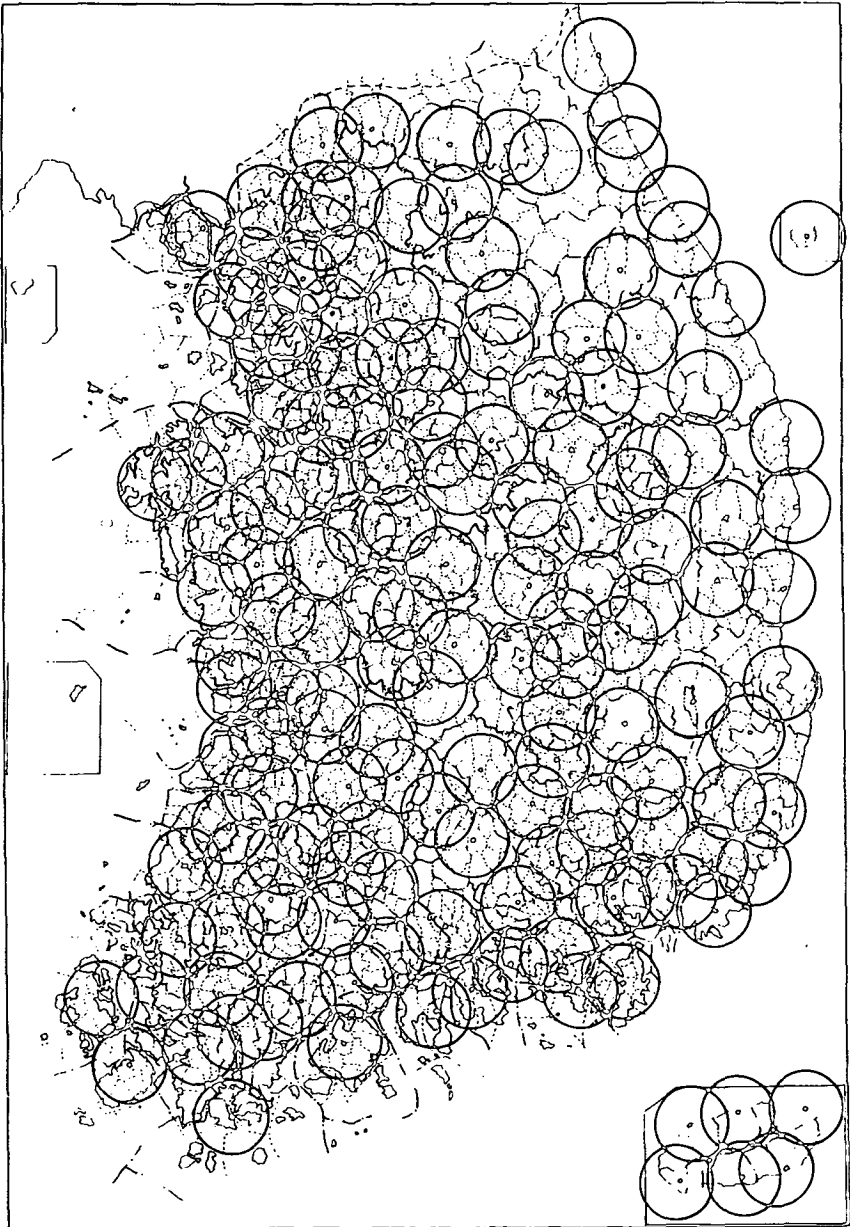


圖 5 - 4 定住生活圈의 理論的 区分圖 (164 圖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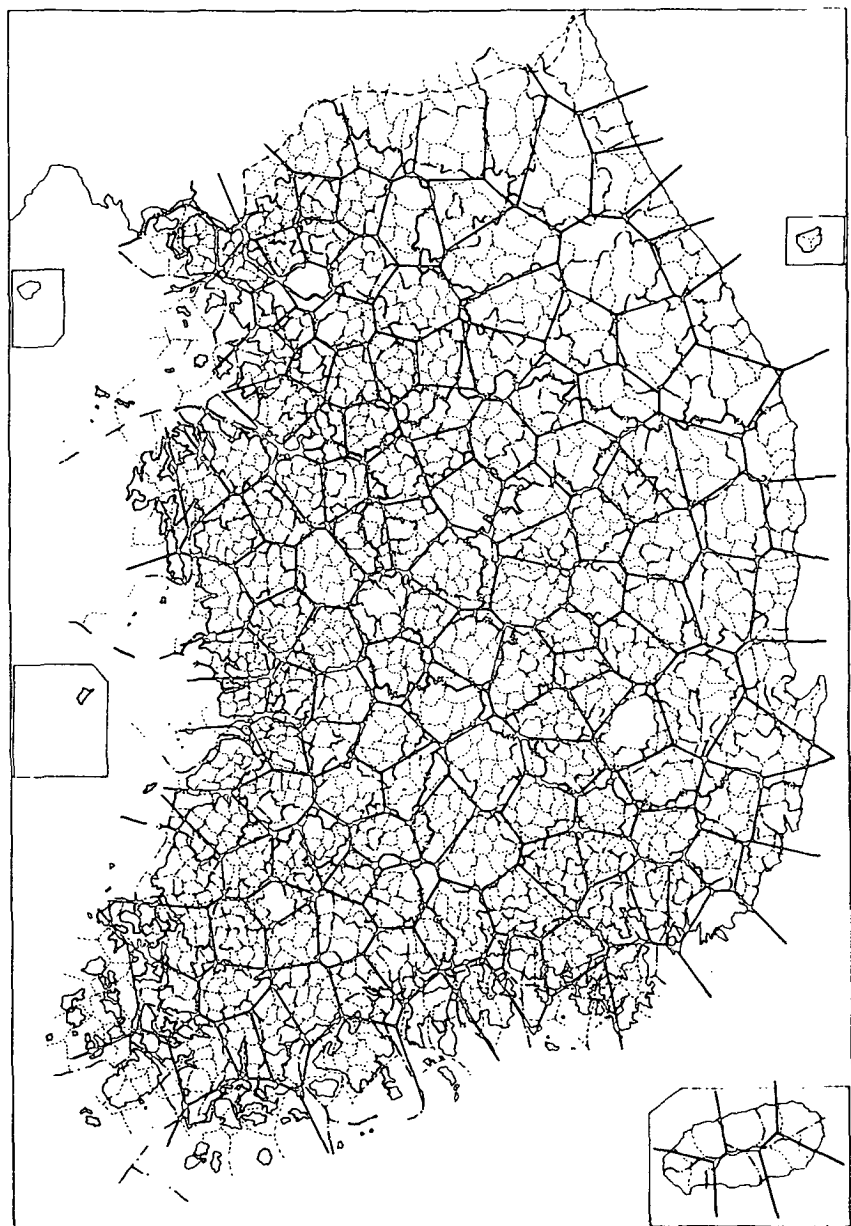


圖 5 - 5 定住生活圈의 理論的 試案 (164 圖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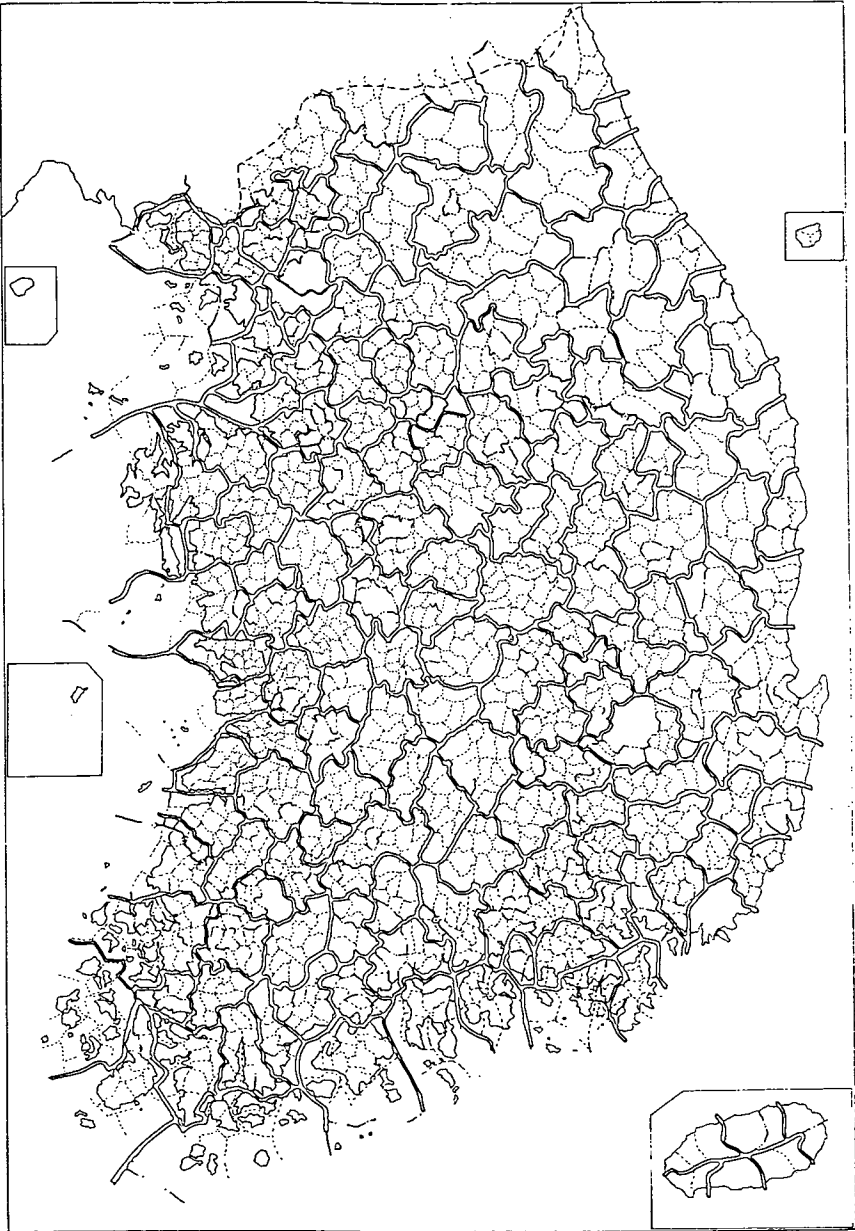


圖 5 - 6 定住生活圖의 區域調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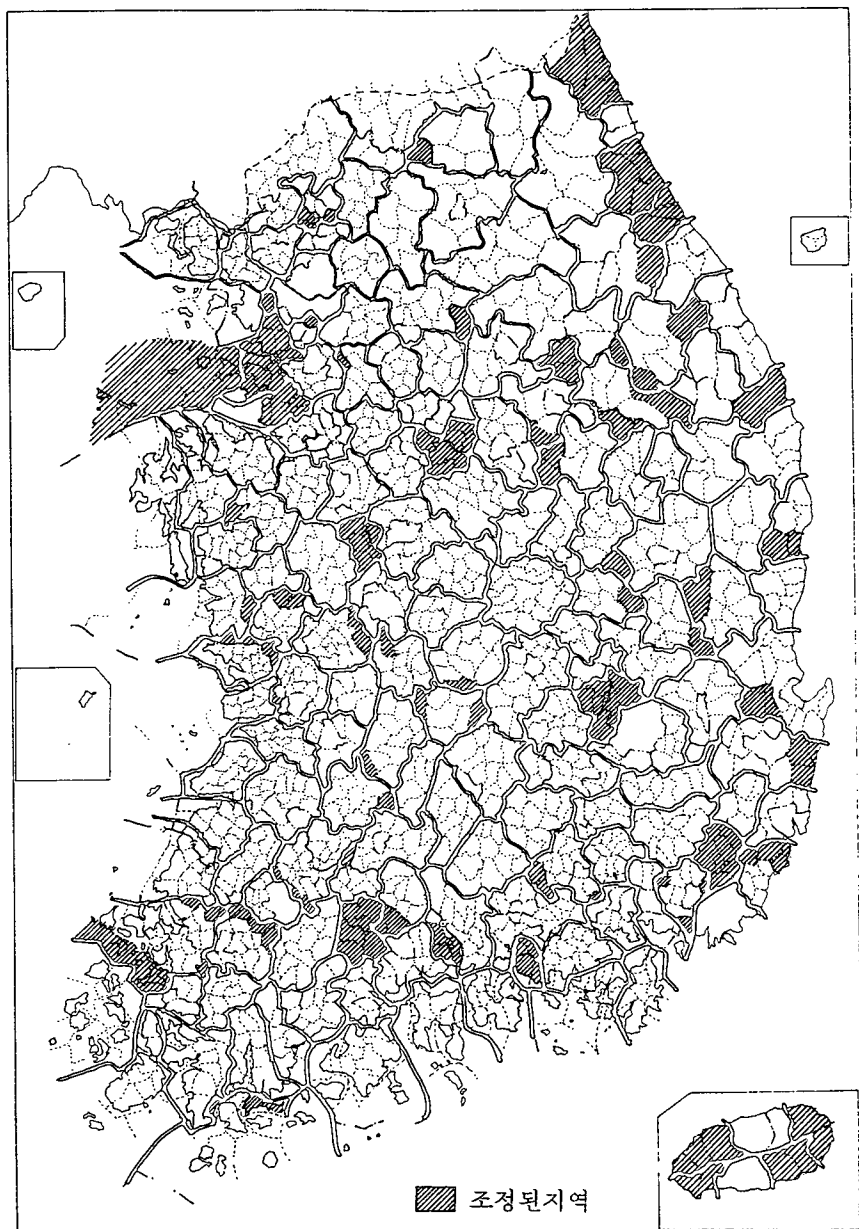


表 5 - 1 새로 調整된 地域과 調整圈

道	試 案 圈 (164 個)	調 整 地 域	調 整 圈 (144 個)
경 기 도	안 양 권	과천면	서 울 권
	부 천 권	부천시	서 울 권
	인 천 권	덕적면, 지월면, 영흥면, 대부면	수 원 권
	반 월 권	남양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
	향 남 권	향남면, 팔탄면, 장안면, 우정면, 양감면	"
	용 인 권	구성면, 남서면	"
	평 택 권	진위면, 서탄면	"
	반 월 권	수암면, 군자면, 반월면	안 양 권
	강 화 권	월곶면	김 포 권
	동 두 천 권	적석면, 백석면, 회천면	의 정 부 권
	양 평 권	양동면	원 주 권
강 원 도	화 천 권	사내면	춘 천 권
	화 천 권	양동면	원 주 권
	주 문 진 권	주문진읍, 연곡면	강 릉 권
	진 부 권	도암면	"
	거 진 권	거진읍, 간성읍, 현내면, 죽왕면	속 초 권
	양 양 권	양양읍, 찬양면, 서면, 현북면, 강현면	"
	주 문 진 권	현남면	"
	태 백 권	원덕읍	동 해 권
	정 선 권	임계면	"
	영 월 권	상동읍	태 백 권
	춘 양 권	석포면	"
	정 선 권	신동읍	영 월 권
	평 창 권	미탄면	"
	제 천 권	수주면, 주천면	"

道	試 案 圈 (164 個)	調 整 地 域	調 整 圈 (144 個)
충 청 북 도	음 성 권 단 양 권 제 천 권 음 성 권 " " 영 월 권 조 치 원 권	노은면, 신니면, 주덕면 수산면, 덕산면 청풍면 금왕읍 음성읍, 원남면, 소이면 영춘면 조치원읍, 전동면, 서면, 남면, 동면, 강외면	충 주 권 " " 조 치 원 권 피 산 권 단 양 권 청 주 권
충 청 남 도	논 산 권 금 산 권 무 주 권 보 령 권 서 천 권 부 여 권 서 천 권 예 산 권	두마면, 벌곡면 북수면 부남면 외산면 옥산면, 충화면, 양화면 적곡면, 청남면 주산면 덕산면	대 천 권 " 금 산 권 부 여 권 " 청 양 권 대 천 권 홍 성 권
전 라 북 도	이 리 권 부 안 권 순 창 권 영 동 권 무 주 권 임 실 권 진 안 권	임피면 위도면 대강면 용화면 무풍면 산서면 성수면	군 산 권 " 남 원 권 무 주 권 김 천 권 장 수 권 임 실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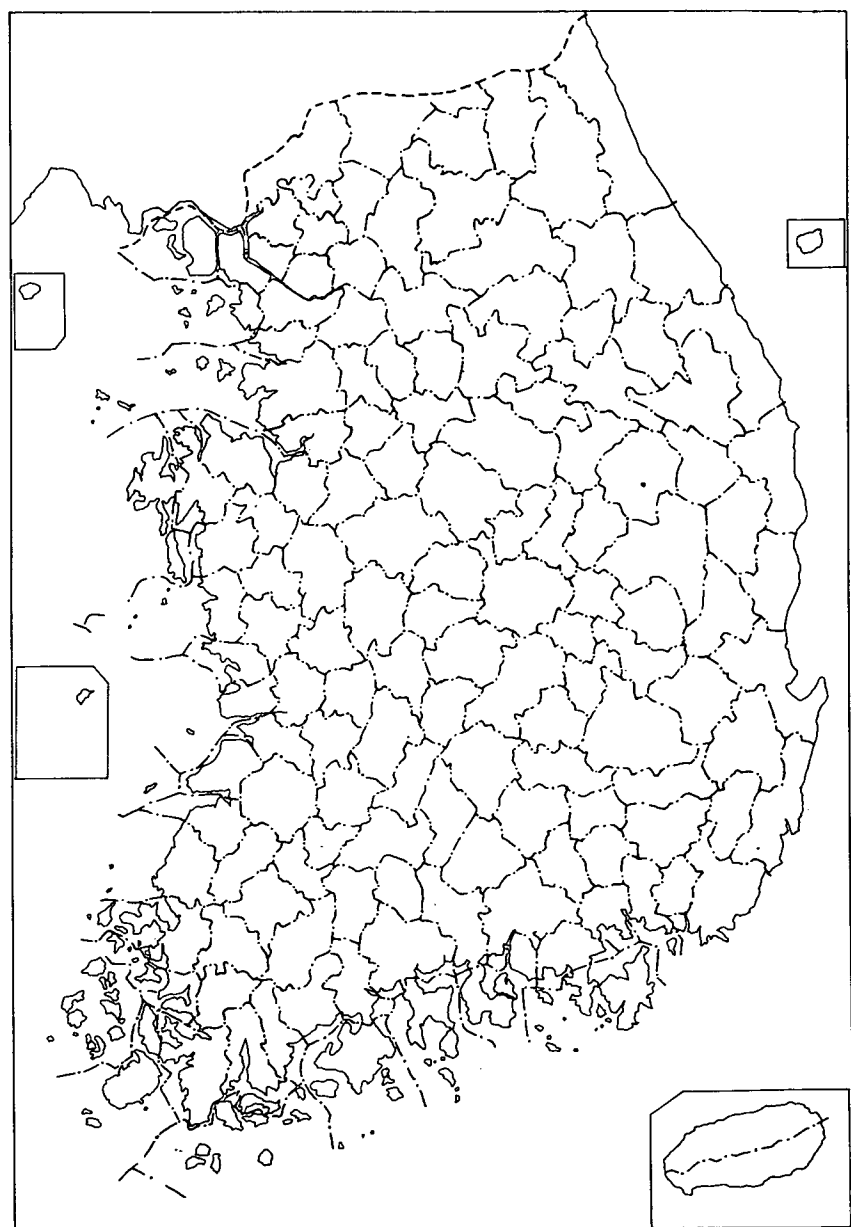
道	試 案 圈 (164 個)	調 整 地 域	調 整 圈 (144 個)
전라남도	담양권 금성권 무안권 구례권 주암권 하동권 주암권 " " 완도권 " " 무안권 " "	고서면, 남면, 대진면 동곡면, 삼도면, 평동면, 남평면, 대촌면 증도면, 압해면 황전면, 월등면 쌍암면 진상면, 옥곡면, 태금면, 진월면 주암면, 석곡면, 목사동면, 죽곡면 송광면 고금면, 약산면 북평면 동강면, 나산면 신광면	광주권 " " 목포권 순천권 " " " " 곡성권 별교권 강진권 해남권 금성권 영광권
경상북도	왜관권 영천권 고령권 포항권 경주권 " " 왜관권 예천권 청송권 군위권 안계권 의성권 평해권 문경권 봉화권 춘양권 평해권	다사면, 하빈면, 기천면, 기산면, 동명면 하양읍, 와촌면, 진량면, 자인면, 용성면 논공면 안강읍, 강동면 감포읍, 양북면, 양남면 무풍면 왜관읍, 석적면, 약목면 풍천면 길안면 봉양면 안평면 천서면 창수면, 병곡면 동노면 봉화읍, 물야면, 봉성면, 상운면 석포면 평해읍, 기성면, 온정면	대구권 " " " " 경주권 울산권 김천권 구미권 안동권 " " 의성권 " " 청송권 영덕권 점촌권 영주권 태백권 울진권

道	試 案 圈 (164 個)	調 整 地 域	調 整 圈 (114 個)
경 상 남 도	김 해 권	녹산면, 대동면	부 산 권
	양 산 권	양산읍, 원동면, 물금면, 동면	"
	장 안 권	기장읍, 철마면, 일광면, 정관면, 장안면	"
	"	온산면, 온양면, 서생면, 웅상면	울 산 권
	경 주 권	감포읍, 양남면, 양북면	"
	의 령 권	산인면, 함안면	마 산 권
	김 해 권	진영읍	창 원 권
	신 현 읍 권	신현읍, 장승포읍, 일운면, 동부면, 남부면, 거제면,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충 무 권
	남 해 권	남해읍, 이동면, 삼동면, 남면, 서면, 고현면, 설천면, 창선면	삼 천 포 권
제 주 도	양 산 권	하북면, 상북면	언 양 권
	한 립 권	한림읍, 애월읍, 한경읍, 추자면	제 주 권
	구 좌 권	구좌읍	"
	"	성산읍	서 귀 포 권
	남 원 권	남원읍, 표선면	"
대 정 권	대 정 권	대정읍, 안덕면	"

완하고 不合理한 圈域을 統廢合하는 절차를 거쳐 定住生活圈을 確定하였다. 最終적으로 設定된 定住生活圈의 圈域數는 141 個로 나타났다<圖 5-7>.

以上과 같이 設定된 定住生活圈(144 個圈域)은 1981 년에 內務部가 주 관해서 研究한 地方定住生活圈(155 個 圈域)에 비해 11 個가 더 적게 나타났다. 그리고 內務部에서 행한 設定案이 第2次 國土綜合計劃의 地域生活圈과 기존의 道·郡 등의 行政區域을 重視하여 그것을 基準으로 삼은 데 비해, 本案은 地域生活圈은 고려하지 않았고 行政區域은 參考로 하되, 그것보다는 地域住民의 現實的인 地域生活與件을 더 重視하여 設定하였다.

圖 5 - 7 定住生活圈의 設定 (144 區域)



3. 設定된 定住生活圏의 内容

設定된 定住生活圏의 内容을 우선 人口規模로 보면 <表 5-2>, 10 萬 미만이 64 個 圏域으로 44.4 %를 차지하며, 10 萬에서 20 萬까지는 43 個 圏域으로 29.9 %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20 萬 미만의 人口를 갖는 定住生活圏이 모두 74.3 %로 거의 3/4 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中規模 以上の 大都市 圏域은 9 個로서 6.3 %에 불과하다.

表 5 - 2 人口規模別 定住生活圏

人 口 規 模	定 住 生 活 圏 數 (%)
10 만 미만	64 (44.4)
10 ~ 20 "	43 (29.9)
20 ~ 30 "	18 (12.5)
30 ~ 50 "	10 (6.5)
50 ~ 100 "	5 (3.5)
100 만 이상	4 (2.8)

그리고 定住生活圏의 半徑距離에 따른 分布를 보면 <表 5-3>, 10 km 미만은 3 個(2.1%)에 불과하며 이것은 울릉도와 목포 및 동두천지역으로 특수도서지역이나 背後地域이 없는 도시지역이다. 그리고 20 km 以上の 地域은 5 個(3.5 %)로, 홍천·인제·양구와 같은 山間地域이나 背後地域이 넓게 나타나는 大邱·安東地域이다. 그 以外는 대체로 10 km ~ 20 km 의 半徑을 가지며, 특히 13 km ~ 18 km 의 半徑을 갖는 地域이 72 個 圏域으로 50 %를 차지하고 있다.

表 5 - 3 中心半徑別 定住生活圏

中 心 半 徑	定 住 生 活 圏 數 (%)
10 km 미만	3 (2.1)
10 ~ 13	50 (34.7)
13 ~ 18	72 (50.0)
18 ~ 20	14 (9.7)
20 이상	5 (3.5)

그 외에 定住生活圈에 대한 內容을 面積과 人口密度에 따라 區分해 보면 <表 5-4> 및 <表 5-5>와 같다.

表 5 - 4 面積에 따른 定住生活圈

총 면 적	정 주 생 활 권 명	계
100㎡미만 지 역	울릉	1 (0.7%)
100~300	동두천, 목포	2 (1.4%)
300~500	강화, 김포, 문산, 벽제, 의정부, 인천, 미금, 안양, 용인, 이천, 장호원, 태안, 온양, 예산, 진천, 문경, 청양, 서천, 선산, 구미, 군산, 이리, 부안, 봉동, 고창, 순창, 담양, 창녕, 남지, 의령, 구례, 마산, 연양, 김해, 창원, 여수, 영암, 안좌, 강흥, 완도	40 (27.8%)
500~1,000	연천, 포천, 갈말, 가평, 화천, 양구, 서울, 양평, 진부, 성남, 여주, 원주, 평창, 정선, 평택, 안성, 제천, 단양, 영주, 춘양, 울진, 서산, 당진, 홍성, 천안, 점촌, 예천, 영양, 영덕, 청송, 대천, 공주, 부여, 대전, 논산, 보은, 옥천, 금산, 영동, 안제, 군위, 의성, 영천, 김제, 전주, 정주, 영광, 장성, 진안, 무주, 장수, 임실, 남원, 광주, 거창, 함양, 성주, 고령, 함천, 청도, 밀양, 산청, 곡성, 화순, 하동, 진주, 울산, 고성, 충무, 남해, 보성, 벌교, 고흥, 무안, 진도, 해남, 강진, 나주, 제주, 서귀포	80 (55.5%)
1,000~1,500	춘천, 속초, 홍천, 횡성, 강릉, 수원, 영월, 동해, 태백, 충주, 피산, 청주, 상주, 김천, 포항, 경주, 순천, 부산	18 (12.5%)
1,500이상	인제, 안동, 대구	3 (2.1%)
		144

表 5 - 5 人口密度에 따른 定住生活圏

인구밀도	정 주 생 활 권 명	계
100명미만	진안, 무주, 장수, 산청, 연천, 갈말, 가평, 화천, 양구, 인제, 홍천, 횡성, 진부, 평창, 영월, 정선, 춘양, 울진, 영양, 청송, 군위	21 (14.6%)
100~200	포천, 춘천, 속초, 양평, 강릉, 여주, 동해, 임실, 장호원, 충주, 단양, 진천, 괴산, 문경, 예천, 순창, 안동, 영덕, 청양, 공주, 보은, 옥천, 금산, 상주, 담양, 영동, 안계, 선산, 김천, 의성, 영천, 봉동, 장성, 거창, 함양, 성주, 고령, 함천, 청도, 창녕, 밀양, 남지, 의령, 구례, 곡성, 화순, 하동, 언양, 고성, 보성, 영암, 안좌, 진도, 해남, 장흥, 서귀포	56 (38.9%)
200~300	강화, 성남, 용인, 이천, 원주, 태백, 안성, 제천, 영주, 태안, 서산, 당진, 예산, 홍성, 점촌, 대천, 부여, 서천, 경주, 부안, 정주, 고창, 영광, 남원, 순천, 벌교, 고흥, 무안, 강진, 울릉	30 (20.8%)
300~500	김포, 문산, 벽제, 동두천, 미금, 온양, 천안, 청주, 논산, 구미, 포항, 김제, 진주, 김해, 충무, 남해, 금성, 완도, 제주	19 (13.1%)
500~1,000	의정부, 수원, 평택, 군산, 이리, 전주, 울산, 창원, 여수	9(6.3%)
1,000 이 상	인천, 서울, 안양, 대전, 광주, 대구, 마산, 부산, 목포	9(6.3%)
		144(100%)

面積이 비교적 넓게 나타나는 圈域은 山間地帶에 屬한 江原道地域과 背後地域이 넓은 內陸都市나 中規模 以上の 都市이며, 面積이 좁은 圈域은 울릉도와 같은 獨立된 도서, 또는 背後地域을 갖지 않는 都市地域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人口密度로 보면 中規模 以上の 都市地域을 제외하면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고, 農村地域에 속한 定住生活圏은 거의 例外없이 300名 미만으로 아주 낮다.

第 6 章

定住生活圏의 類型化

1. 定住生活圏의 類型

가. 類型化 I (大都市型, 都市型, 農村型)

設定된 定住生活圏은 都市型和 農村型으로 區分하고, 그 區分의 基準은 中心都市人口를 10 萬으로 하여 그 以上을 都市型으로 하고 그 以下는 農村型으로 하였다. 이것은 대체로 人口 10 萬 미만의 農村中心都市는 背後地域인 周邊의 農村地域의 人口보다 적고 自生的인 都市成長이 크게 制限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最近의 成長趨勢가 크게 停滯되고 있는 都市로서, 成長을 誘導할 必要가 있다고 判斷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都市型은 다시 人口 100 萬 以上이거나 1990 年代 以前에 100 萬 以上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光州와 大田을 包含하여 大都市型으로 하고 나머지는 都市型으로 區分하였다. 그 結果, 大都市型 6 個, 都市型 33 個, 農村型이 111 個로 나타났다 <表 6-1>.

類型化 I 에 의한 좀 더 자세한 類型別 內容은 <圖 6-1> 및 <表 6-2> 와 같다.

表 6-1 類型化 I (大都市型, 都市型, 農村型)

區 分		中心都市 人口規模	
都 市 型	大 都 市 型	100 萬 以上	6 (4.2)
	都 市 型	50 萬 以上	1 (0.7)
		20 ~ 50 萬	9 (6.3)
		10 ~ 20 萬	17 (11.8)
農 村 型	市 規 模	5 ~ 10 萬	18 (12.5)
	邑 "	2 ~ 5 萬	44 (30.6)
	面 "	2 萬 미만	49 (34.0)
計			144 (100.0)

나. 類型化 II (高成長型 · 成長型 · 停滯型 · 落後型)

類型化 II는 最近 5年間(1978年~1983年)의 人口增加率을 基準으로 하여 區分하였다. 定住生活圈의 設定에서 基礎單位로 한 것은 行政區域의 邑·面單位가 되었기 때문에, 資料가 不備한 관계로 成長度의 指標로 適當한 資料를 찾아 내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人口는 대체로 綜合的인 社會의 指標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손쉽게 利用할 수 있는 人口增加率을 區分指標로 採擇하여 類型區分하였다. 그 區分の 基準은 같은 期間의 全國 人口增加率이 平均 1.76%이고 定住生活圈의 全體 平均이 -1.24%인 것을 參考로 하여 人口增加率 2.5% 以上은 高成長型, 0~2.5% 미만은 成長型, 그리고 -3.5~0%는 停滯型, -3.5% 미만은 落後型으로 區分하여 類型化하였다. 보다 자세한 類型化 II에 의한 區分內容은 <圖 6-2> 및 <表 6-3>과 같다.

다. 類型化 III (平野型 · 中間型 · 山間型)

類型化 III은 區分指標로 耕地率을 使用하였다. 그것의 區分은 耕地率의 平均값과 標準偏差를 計算해서 基準指標로 삼았다. 여기서 計算된 平均값은 22.15% 였고 그것의 標準偏差는 10.47 이었다. 이것에 의해 算定된

圖 6-1 定住生活圈의 類型 I (大都市型, 都市型, 農村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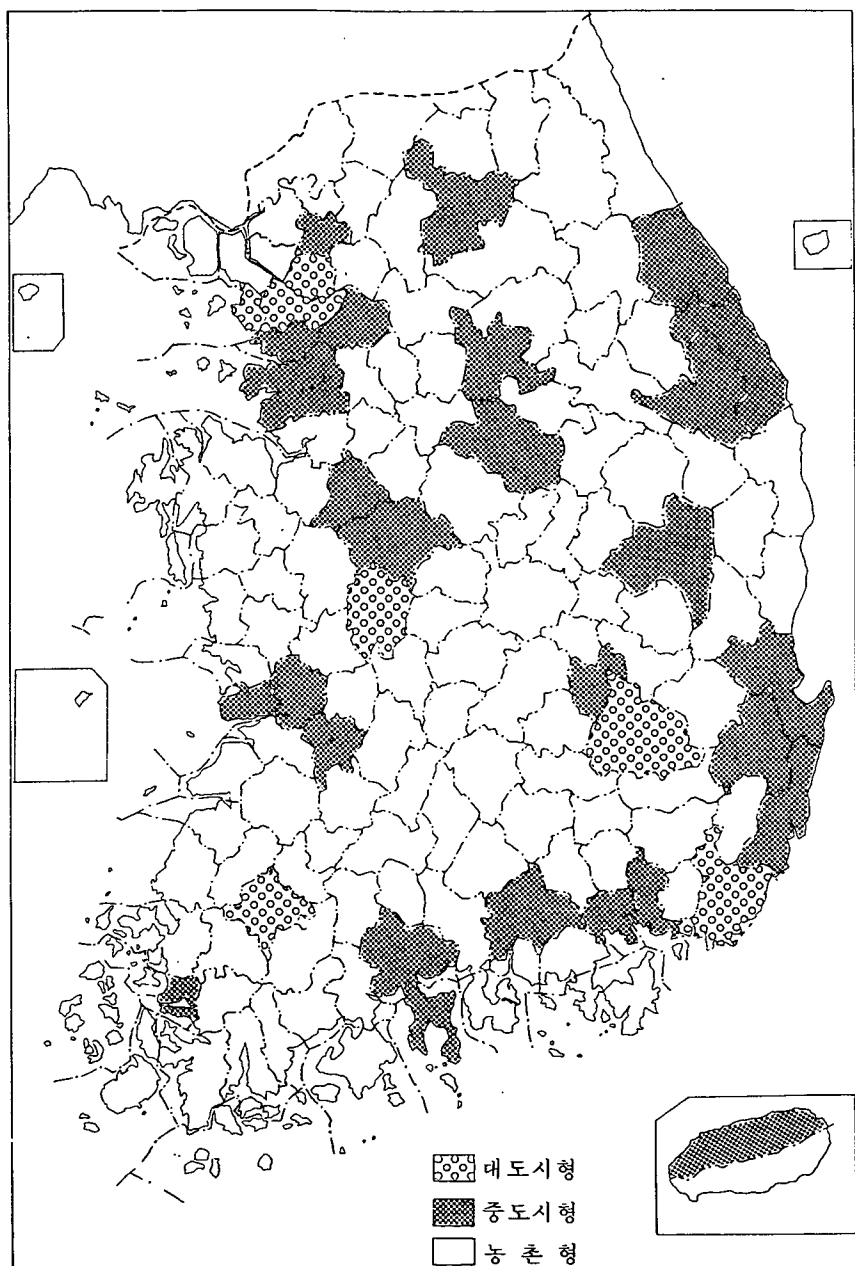


圖 6-2 定住生活圈 類型Ⅱ (成長度에 따른 區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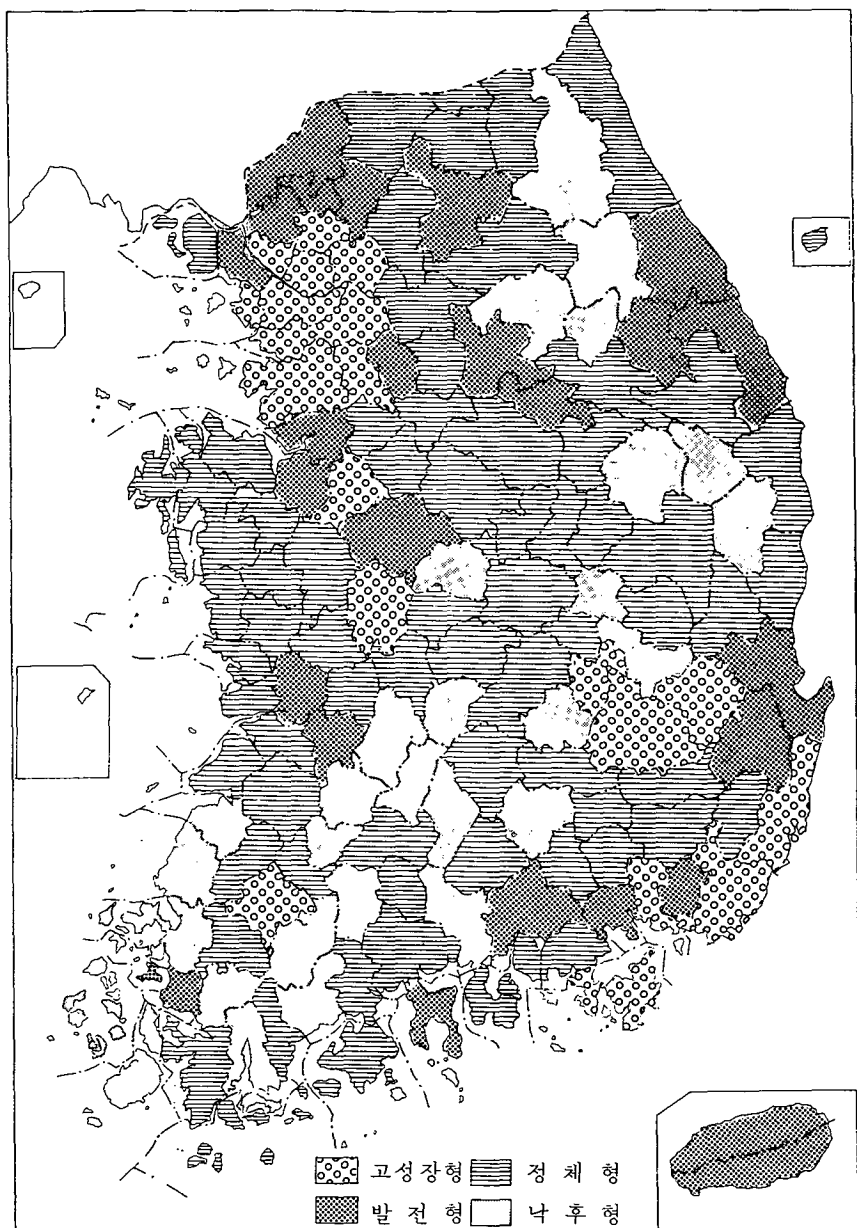


表 6-2 定住生活圏 類型 I (大都市型, 都市型, 農村型)

대도시형 (6) 100 만 이상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대구, 광주 (6)
도시형 (27)	50 만 이 상	울산 (1)
	50 만 ~ 20 만	안양, 성남, 수원, 청주, 포항, 전주, 진주, 마산, 목포 (9)
	20 만 ~ 10 만	의정부시, 춘천, 강릉, 원주, 동해, 태백, 충주, 천안 안동, 구미, 경주, 군산, 이리, 순천, 창원, 여수, 제주 (17)
농촌형 (111)	10 만 ~ 5 만	동두천, 속초, 평택, 제천, 영주, 온양, 점촌, 대천, 공주, 상주, 김천, 영천, 정주, 남원, 김해, 충무, 나주, 서귀포 (18)
	5 만 ~ 2 만	강화, 김포, 문산, 벽제, 홍천, 미금, 용인, 이천, 여주, 영월, 정선, 안성, 울진, 서산, 당진, 예산, 홍성, 진천, 부여, 논산, 보은, 옥천, 금산, 영동, 의성, 김제, 부안, 영광, 장성, 담양, 거창, 함양, 청도, 창녕, 밀양, 화순, 고성, 벌교, 해남, 강진, 장흥, 태안, 완도, 예천, 선산 (45)
	2 만 이 하	연천, 포천, 가평, 화천, 양구, 인제, 양평, 횡성, 진부, 평창, 장호원, 단양, 춘양, 피산, 문경, 영양, 영덕, 청송, 청양, 서천, 안계, 봉동, 고창,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성주, 고령, 함천, 남지, 의령, 산청, 구례, 곡성, 하동, 언양, 남해, 보성, 고흥, 무안, 영암, 안좌, 진도, 울릉, 군위, 갈말 (48)

表 6-3 定住生活圈 類型Ⅱ (成長度에 따른 區分)

구 분	정 주 생 활 권 명
고성장형 19 (13.2%)	서울, 의정부, 벽제, 인천, 미금, 성남, 안양, 수원, 용인, 천안, 대전, 광주, 대구, 구미, 영천, 울산, 부산, 창원, 충무
성 장 형 26 (18.1%)	연천, 문산, 동두천, 포천, 김포, 평택, 이천, 춘천, 원주, 제천, 강릉, 정선, 동해, 온양, 청주, 이리, 전주, 목포, 여수, 진주, 마산, 김해, 경주, 포항, 제주, 서귀포
정 체 형 70 (48.6%)	강화, 가평, 양평, 여주, 장호원, 안성, 화천, 갈매, 양구, 속초, 홍천, 영월, 태백, 진천, 괴산, 충주, 단양, 당진, 서산, 태안, 홍성, 청양, 공주, 매천, 부여, 논산, 서천, 군산, 봉동, 금산, 김제, 부안, 정주, 장성, 담양, 나주, 해남, 장흥, 고흥, 벌교, 순천, 구례, 남원, 문경, 점촌, 예천, 상주, 선산, 김천, 옥천, 영동, 안동, 의성, 청송, 울진, 영덕, 청도, 고령, 거창, 산청, 의령, 창령, 남지, 밀양, 언양, 고성, 남해, 울릉, 완도
낙 후 형 29 (20.1%)	인제, 진부, 평창, 횡성, 영양, 춘양, 영주, 보은, 군위, 안계, 성주, 진안, 장수, 무주, 함양, 임실, 순창, 곡성, 화순, 보성, 영암, 진도, 강진, 무안, 영광, 고창, 하동, 함천, 안좌

區分基準과 區分에 使用된 耕地率은 <表 6-4>와 같다.

表 6-4 耕地率에 의한 類型區分の 基準

地 域 類 型	區 分 基 準	耕 地 率
平 野 型	$(M + \frac{1}{2} S.D) \sim$	27 % ~
中 間 型	$(M - \frac{1}{2} S.D) \sim (M + \frac{1}{2} S.D)$	17 % ~ 27 %
山 間 型	$\sim (M - \frac{1}{2} S.D)$	~ 17 %

以上과 같은 區分基準에 의해 행해진 類型化Ⅲ의 자세한 內容은 <圖 6-3> 및 <表 6-5>과 같다.

그리고 定住生活圈의 類型에 따라 交叉對照해 보면, 우선 都市·農村型과 成長期間의 交叉分析에서는 대체로 中心都市의 階層規模에 따라 比例해서 成長을 나타내고 階層規模가 낮은 農村型일수록 落後型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表 6-6>

이를 다시 耕地率에 따른 類型과 成長度間을 交叉對照하면 <表 6-7>과 같이 나타난다.

2. 農村定住生活圈의 類型

定住生活圈으로 設定된 144個 圈域中에서 農村定住生活圈으로 分類된 111個 圈域을 그 地域이 위치하고 있는 地域與件에 따라 다시 細分하여 類型化하였다. 그것의 類型區分은 大都市近郊農村型, 一般農村型, 그리고 特殊地域農村型으로 크게 3區分하였다.

여기서 大都市近郊農村型은 大都市型的 定住生活圈으로 分類된 6大都市의 周邊에 位置하는 農村地域으로 大都市의 影響圈에 속해 있고 潛在的인 大都市의 通勤圈內에 위치하는 地域이다.

表 6-5 定住生活圈 類型Ⅲ (地形條件에 따른 區分)

구 분	정 주 생 활 권 명
평 야 형 (46 권역) 31.9 %	강화, 김포, 벽제, 문산, 안양, 수원, 이천, 여주, 장호원, 평택, 안성, 진천, 천안, 온양, 당진, 서산, 태안, 홍성, 예산, 청주, 대천, 부여, 논산, 서천, 군산, 이리, 김제, 전주, 정주, 부안, 고창, 영광, 무안, 나주, 광주, 목포, 영암, 강진, 해남, 진도, 안좌, 벌교, 예천, 남지, 창원, 김해
준평야형 (32 권역) 22.2 %	연천, 갈말, 동두천, 의정부, 인천, 용인, 청양, 장성, 담양, 순창, 남원, 장흥, 완도, 보성, 고흥, 여수, 남해, 고성, 진주, 의령, 밀양, 창녕, 고령, 성주, 구미, 선산, 안계, 상주, 옥천, 점촌, 영주, 제주
준산간형 (30 권역) 20.8 %	포천, 미금, 서울, 성남, 제천, 충주, 괴산, 보은, 대전, 공주, 금산, 봉동, 임실, 화순, 곡성, 순천, 하동, 함천, 마산, 부산, 울산, 경주, 포항, 영천, 대구, 김천, 안동, 서귀포, 울릉
산 간 형 (36 권역) 25.0 %	속초, 인제, 양구, 화천, 춘천, 가평, 홍천, 양평, 횡성, 원주, 진부, 평창, 정선, 영월, 강릉, 동해, 태백, 춘양, 단양, 문경, 울진, 영양, 영덕, 청송, 의성, 군위, 영동, 무주, 진안, 장수, 거창, 함양, 산청, 구례, 청도, 연양
계	144

圖 6-3 定住生活圖 類型Ⅲ (地形圖에 따른 區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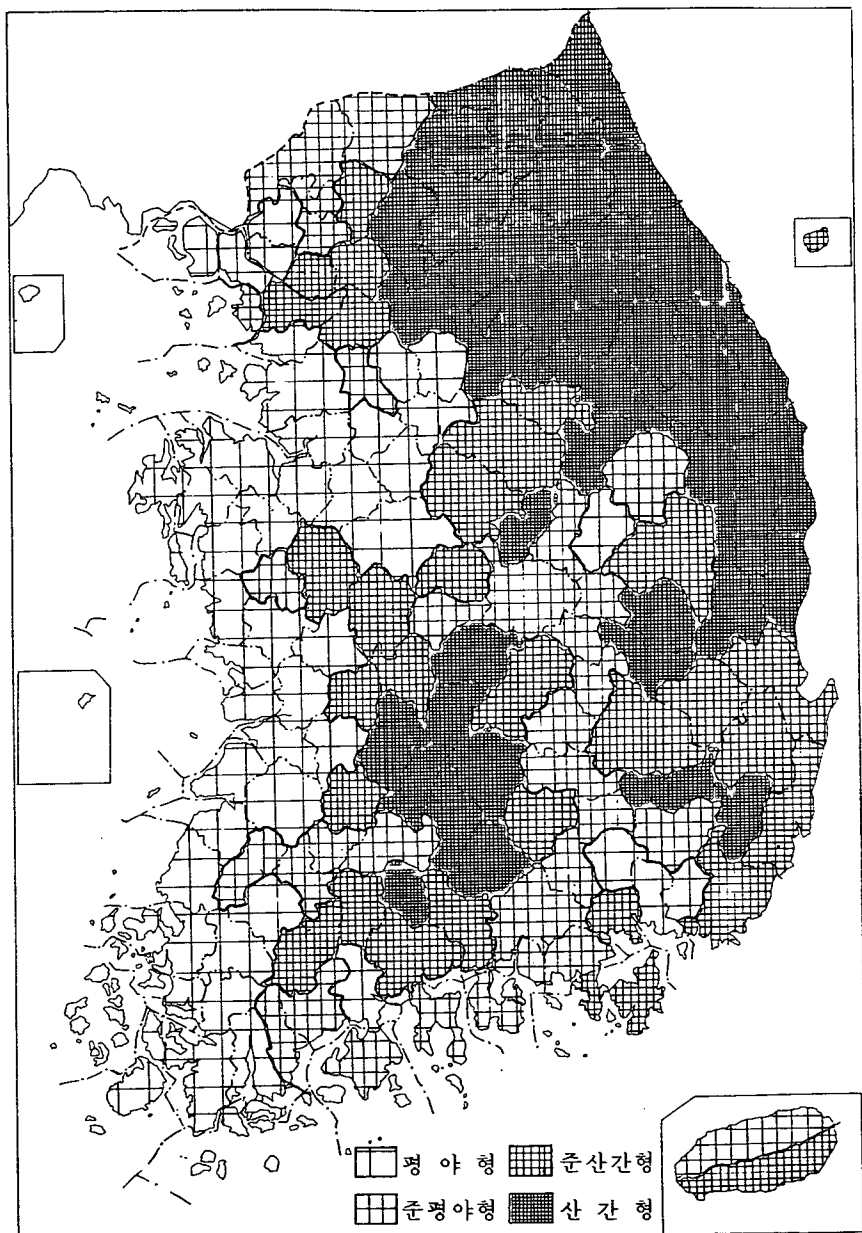


表 6-6 都市・農村型과 成長度別 交叉對照

都市農村別 \ 成長度別	高成長型	成長型	停滯型	落後型	計
大都市型	6	0	0	0	6
都市型	8	15	4	0	27
農村型	5	11	66	29	111
計	19	26	70	29	144

表 6-7 平野型・中間型・山間型과 成長度間의 交叉對照

耕地率別 \ 成長度別	高成長型	成長型	停滯型	落後型	計
平野型	6	10	23	7	46
中間型	13	11	28	11	63
山間型	0	5	19	11	35
計	19	26	70	29	144

特殊地域農村型은 休戰線에 接하고 있는 接敵地域과 많은 島嶼를 包含하고 있는 西南海岸地域이다. 以上の 地域을 除外한 農村型은 모두 一般農村型으로 分類하여 類型化하였다.

以上の 農村定住生活圈에 대한 자세한 內容은 <圖 6-4> 및 <表 6-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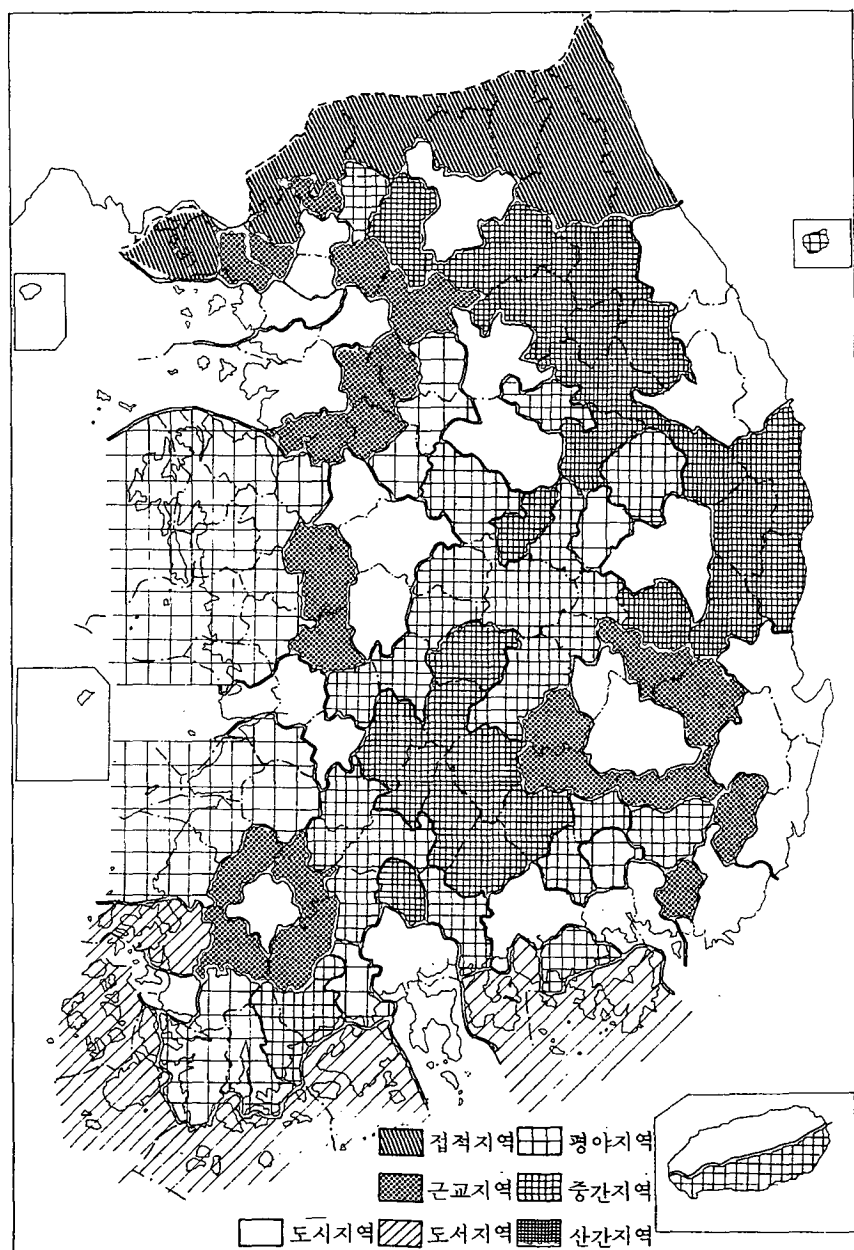
여기서 農村定住生活圈으로 區分된 地域은 바로 農村地域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農村綜合開發의 對象이 되는 地域이며 그 單位地域은 바로 開發의 對象單位가 될 수 있다는데 중요한 意味가 있다.

이러한 農村定住生活圈을 要約하여 整理하면 <表 6-9> 및 <表 6-10>

表 6-8 類型別 農村生活定住生活圏

구 분		고 성 장	성 장	정 체	나 후
대 도 시 근 교 농 촌 형 (22)	수 도 권(9)	벽제, 미금, 용인(3)	김포, 이천, 평택, 동두천 (4)	양평, 안성(2)	
	부 산 권(2)		김해(1)	언양(1)	
	대 구 권(5)	영천(1)		청도, 고령(2)	군위, 성주(2)
	대 전 권(2)			공주, 논산(2)	
일 반 농 촌 형 (74)	광 주 권(4)			장성, 담양, 나주(3)	화순(1)
	평 야 평(18)		온양(1)	여주, 장호원, 진천 당진, 예산, 서산, 태안, 홍성, 대천, 부여, 서천, 김제, 부안, 정주, 해남, 벌교, 남지, 예천(18)	고창, 영광(2) 영암, 강진(2)
	중 간 형(27)		제천, 서귀포 포천(3)	피산, 옥천, 상주, 청양, 금산, 봉동, 남원, 의령, 김천, 서산, 점촌, 밀양, 창녕, 울릉, 고성, 장흥(16)	보은, 임실, 순창, 곡성, 보성, 안제, 영주, 하동(8)
	산 촌 형(24)		정선(1)	가평, 홍천, 영월, 단양, 울진, 영덕, 청송, 의성, 영동, 거창, 산청, 구례, 문경(13)	진부, 횡성, 평창, 춘양, 영양, 무주, 진안, 장수, 함양 합천(10)
특 수 농 촌 형 (15)	접적지역(8)		문산, 연천(2)	강화, 갈말, 화천, 양구, 속초(5)	인제(1)
	도서지역(7)	충무(1)		완도, 고흥, 남해(3)	안좌, 진도, 무안(3)
계 (111)		5	12	65	29

圖 6-4 農村定住生活圈의 類型區分 (I)



과 같다. 대체로 成長度에 있어서는 大都市近郊型이 가장 높고 特殊地域 農村型은 가장 落後型을 나타내고 있다.

表 6-9 農村定住生活圈의 類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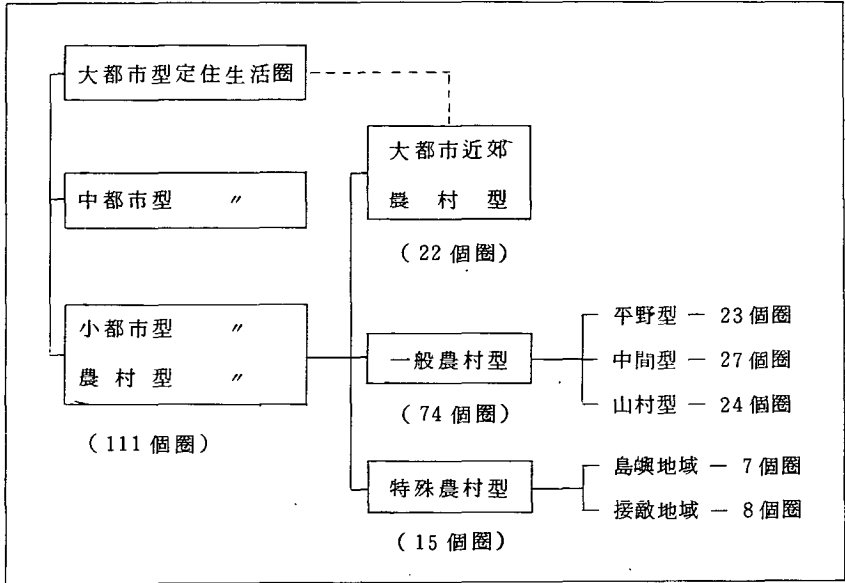


表 6-10 農村地域의 立地的 性格과 人口成長率에 따른 區分

區 分	人 口 成 長 率				計
	高 成 長 (2.5% 以上)	成 長 (0~2.5%)	停 滯 (0~-3.5%)	落 後 (-3.3%未滿)	
大都市近郊農村型	4	5	10	3	22
一 般 農 村 型	0	5	47	22	74
平 野 型	-	1	18	4	23
中 間 型	-	3	16	8	27
山 村 型	-	1	13	10	24
特 殊 農 村 型	1	2	8	4	15
島 嶼 地 域	1	-	3	3	7
接 敵 地 域	-	2	5	1	8
計	5	12	65	29	111

第 7 章

要約 및 結論

本研究에서는 定住生活圏設定이 必要하게된 背景을 과거 第1次 및 第2次 國土綜合開發計劃을 中心으로 살펴보고, 圈域의 設定에 대한 理論的 接近과 採擇된 設定基準에 의거, 定住生活圏을 設定하였다. 設定된 定住生活圏은 定해진 基準에 따라 類型化하고, 이것은 다시 農村定住生活圏으로 分類된 것을 大都市近郊農村型, 特殊地域農村型, 一般農村型으로 區分하여 類型化하였다.

그러나 本 研究를 통해 행해진 定住生活圏은 基礎的인 統計分析和 地圖化作業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個個의 單位地域에 대한 충분한 檢討와 研究는 未洽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또한 地域은 항상 變化하고 있기 때문에 現在 圈域設定과 類型化가 완벽하다고 할 지라도 時間이 경과하면 變化된 地域與件을 다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 設定된 144個의 定住生活圏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研究發展시켜 나가야 할 必要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定住生活圏의 單位地域別로 社會·教育·文化施設의 水準 및 就業이나 所得의 實態調查가 계속 병행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全般的인 地域의 實態를 把握해야 圈域의 實相은 물론 開發에 대한 計劃, 財政規模와 그에 따른 優先順位の 決定등 具體的이고 段階的인 開發을 施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定住生活圏을 單位로 하는 地域計劃이나 開發에 있어서는 住民의

要求와 參與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同時에 定住生活圈의 開發은 상대적으로 落後된 地域을 우선하여 選定하고 段階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할 必要가 있다.

마지막으로 本 研究의 結果가 地方計劃이나 地域政策에 대한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活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附錄 1>

定 住 生 活 圈 의 現 況 (I)

구 분	권역명	인 구 ('83)	면 적 (km ²)	중심도시 면 적	인 구 증가율	인 구 밀 도	중심도시 반 경	경 지 율	임 야 율	인구증가율에의한구분				경지율에의한구분			
										고 성 장	성 장	정 체	낙 후	평야	준 평야	준 산간	산간
대 도 시 형	서울	9,861,996	853.6	9,204,344	3.8	11,553.41	16.48	19.6	34.70	○						○	
	부산	3,528,046	1,033.8	3,395,171	3.3	3,412.7	18.14	17.3	59.88	○						○	
	대구	2,180,383	1,458.8	1,958,812	5.0	1,494.64	21.54	21.7	60.74	○						○	
	인천	1,244,819	356.8	1,220,311	5.2	3,488.84	10.65	25.5	44.17	○					○		
	광주	998,100	632.5	843,000	3.0	1,578.02	14.18	36.6	44.79	○				○			
대 도 시 형	대전	923,933	880.8	800,000	4.6	1,048.97	16.74	21.5	63.74	○						○	
	울산	628,671	936.6	506,878	5.1	669.08	17.29	18.8	67.36	○						○	
	마산	482,918	473.1	424,227	1.3	1,020.75	473.1	18.1	71.95		○					○	
	성남	127,513	532.7	417,000	5.8	239.37	13.02	20.2	7.96	○						○	
	전주	497,959	560.5	409,000	2.3	888.42	13.35	27.0	63.39		○			○			
	수원	664,961	1,203.9	374,000	4.1	552.33	19.57	37.9	3.14	○				○			
	안양	475,045	325.2	292,000	8.8	1,460.7	10.17	30.5	49.45	○				○			
	목포	289,860	276.8	228,000	0.6	1,047.18	9.38	40.0	41.69		○			○			
	포항	412,000	1,123.7	245,000	1.5	366.65	18.91	17.0	72.25		○					○	
	청주	530,317	1,189.3	223,016	2.4	445.91	19.45	31.5	55.09		○			○			
	진주	348,748	939.2	219,496	1.7	371.32	17.29	25.0	62.89		○				○		
	제주	305,172	953.8	188,518	2.1	319.95	17.42	26.2	59.38		○				○		

구분	권역명	인 구 ('83)	면 적 (km ²)	중심도시 인 구	인 구 증가율	인 구 밀 도	중심도시 반 경	경 지 율	임 야 율	인구증가율에의한구분				경지율에의한구분			
										고 성장	성장	정체	낙후	평야	준 평야	준 산간	산간
도	이 리	317,400	497.1	181,000	2.4	638.50	12.57	56.6	26.21		○			○			
	군 산	299,236	387.0	180,000	-0.2	773.22	11.09	45.0	22.11			○		○			
	여 수	305,000	446.5	175,000	1.2	683.09	11.92	25.1	65.73		○				○		
	춘 천	226,765	1,244.5	162,275	0.4	182.21	19.90	10.6	78.61		○						○
	천 안	240,811	632.0	152,000	3.1	381.03	14.18	29.5	58.84	○				○			
	원 주	215,217	985.7	147,226	0.6	218.33	17.71	16.8	75.38		○						○
시	의정부	211,981	350.8	145,000	3.8	604.27	10.56	25.4	64.28	○					○		
	창 원	328,852	460.8	143,429	5.9	713.65	12.11	29.0	53.16	○				○			
	경 주	255,000	1,070.0	130,000	0.4	238.32	18.45	21.2	68.30		○					○	
	강 릉	215,224	1,099.0	125,994	2.0	195.83	18.70	11.3	82.17		○						○
	구 미	191,866	458.0	121,000	3.1	418.92	12.07	22.4	60.32	○					○		
	충 주	232,564	1,255.0	120,407	-1.3	185.30	19.98	20.5	65.58				○			○	
형	순 천	293,600	1,016.0	118,000	-0.3	288.97	17.98	21.9	69.34				○			○	
	태 백	245,747	1,198.3	117,143	-0.02	205.07	19.53	5.7	80.08				○				○
	안 동	229,086	1,518.8	111,000	-1.8	150.83	21.98	17.2	73.02				○			○	
	동 해	215,218	1,364.5	103,005	0.5	157.72	20.84	9.1	84.90		○						○
농촌 형	동두천	96,746	253.5	69,000	0.7	381.64	8.98	24.1	64.65		○				○		
	미금	210,217	495.6	44,121	3.5	424.16	12.56	19.7	71.32	○						○	
	여주	90,453	536.0	24,415	-0.6	168.75	13.06	31.9	53.84				○				

구 분	권역명	인 구 ('85)	면 적 (<i>km</i> ²)	중심도시 면 적	인 구 증가율	인 구 밀 도	중심도시 반 경	경 지 율	임 야 율	인구증가율에의한구분				경지율에의한구분			
										고 성 장	성 장	정 체	낙 후	평 야	준 평 야	준 산 간	산 간
농	평 택	284,216	525.8	67,201	1.6	540.54	12.93	53.2	29.61		○			○			
	문 산	118,144	351.3	30,724	0.1	336.30	10.57	33.5	50.92		○			○			
	벽 제	169,165	350.3	21,374	2.5	482.91	10.55	41.0	45.27	○				○			
	연 천	67,848	708.0	11,963	1.2	95.83	15.01	22.5	49.03		○				○		
	포 천	68,441	516.1	17,852	0.5	132.61	12.81	21.6	69.46		○					○	
	가 평	60,235	847.0	18,184	-1.4	71.11	16.41	9.6	83.81			○					○
촌	양 평	90,068	828.1	17,149	-1.4	108.76	16.23	16.8	65.75			○					○
	이 천	97,525	442.1	29,356	1.8	220.59	11.86	34.4	53.63		○			○			
	장 호원	83,412	497.0	16,754	-2.4	167.83	12.57	33.2	55.87			○		○			
	용 인	93,651	409.2	34,648	3.4	228.86	11.41	26.0	64.36	○					○		
	안 성	128,814	616.0	33,010	-1.0	209.11	14.00	34.0	55.53			○		○			
	김 포	106,298	346.1	22,011	0.05	307.13	10.49	45.3	34.09		○			○			
형	강 화	87,551	405.4	21,364	-1.6	215.96	11.35	43.1	46.07			○		○			
	속 초	162,362	1,233.9	72,324	-0.7	131.58	19.81	10.7	82.08			○					○
	홍 천	92,197	1,339.8	30,804	-2.6	68.81	20.65	11.6	83.63			○					○
	횡 성	69,259	1,009.4	19,301	-3.6	68.61	17.92	15.1	52.56				○				○
	영 월	100,951	1,084.4	31,498	-2.3	93.09	18.57	11.3	82.08			○					○
	평 창	38,287	903.6	13,922	-3.7	42.37	16.95	9.4	86.65				○				○
	진 부	27,473	669.9	14,327	-0.6	41.01	14.60	9.5	85.88				○				○

구 분	권역명	인 구 ('83)	면 적 (km ²)	중심도시 면 적	인 구 증가율	인 구 밀 도	중심도시 반 경	경 지 율	임 야 율	인구증가율에의한구분				경지율에의한구분			
										고 성장	성장	정체	낙후	평야	준 평야	준 산간	산간
농	정 선	51,308	745.6	20,371	0.03	68.81	15.40	9.5	83.31		○						○
	갈 말	96,771	970.5	16,380	-0.8	99.71	17.57	25.3	56.52			○			○		
	화 천	29,000	805.0	12,000	-2.5	36.02	16.00	7.5	58.89			○					○
	양 구	34,314	616.8	15,488	-1.6	55.63	14.01	14.3	50.14			○					○
	인 제	47,816	1,951.3	12,455	-3.6	24.50	24.92	4.4	90.01				○				○
	제 천	140,877	576.3	97,452	0.4	244.45	13.54	18.3	75.22		○					○	
	보 은	75,547	598.4	20,430	-3.5	126.24	13.80	20.6	70.15				○				○
	옥 천	88,268	534.8	32,190	-1.6	165.05	13.04	22.3	67.27			○			○		
	영 동	89,000	786.6	28,000	-2.4	113.15	15.82	14.7	77.48			○					○
	진 천	60,918	406.2	20,983	-3.0	149.97	11.37	27.6	61.84			○		○			
촌	피 산	142,000	1,072.6	14,000	-1.9	132.39	18.47	20.4	72.41			○				○	
	단 양	63,186	702.9	15,087	-2.7	89.89	14.95	10.4	83.49			○					○
	금 산	101,024	587.2	31,437	-1.8	172.04	13.67	19.7	72.71			○				○	
	공 주	163,702	895.0	58,395	-1.0	182.91	16.87	20.9	70.06			○				○	
	논 산	219,247	677.7	34,095	-1.9	323.51	14.68	40.8	34.46			○		○			
	부 여	123,293	543.0	32,078	-2.2	227.05	13.14	30.2	52.89			○		○			
	서 천	94,176	338.7	16,634	-2.9	278.05	10.38	41.5	44.37			○		○			
	대 천	144,906	504.1	53,189	-0.4	287.45	12.66	28.0	62.84			○		○			
	청 양	65,490	435.5	13,459	-2.9	150.38	11.77	24.5	66.40			○			○		
	형																

구 분	권역명	인 구 ('83)	면 적 (km)	중심도시 면 적	인 구 증가율	인 구 밀 도	중심도시 반 경	경 지 율	임 야 율	인구증가율에의한구분				경지율에의한구분			
										고 성장	성장	정체	낙후	평야	준 평야	준 산간	산간
농	홍 성	148,503	535.6	33,456	- 1.9	277.26	13.05	35.8	53.86			○		○			
	에 산	135,658	481.4	41,087	- 1.0	281.79	12.37	38.4	45.80			○		○			
	서 산	157,002	648.3	44,853	- 1.4	242.17	14.36	34.3	53.87			○		○			
	태 안	89,889	415.4	28,017	- 1.1	216.39	11.49	30.3	56.04			○		○			
	당 진	153,395	588.4	27,188	- 1.3	260.69	13.68	42.9	43.88			○		○			
	온 양	153,000	466.8	57,000	0.3	327.76	12.18	41.8	44.62		○			○			
	정 주	229,740	876.8	76,000	- 2.4	262.02	16.70	36.2	52.50			○		○			
	남 원	152,301	742.6	60,000	- 1.7	205.09	15.37	24.4	68.08			○			○		
	봉 동	70,763	496.4	18,327	- 2.2	142.55	12.57	17.9	73.83			○				○	
	진 안	64,673	713.3	16,942	- 4.1	90.67	15.06	13.3	81.17				○				○
촌 형	무 주	45,000	538.0	15,000	- 3.5	83.64	13.08	11.3	84.10				○				○
	장 수	52,473	530.7	12,373	- 4.1	98.88	12.99	16.2	78.42				○				○
	임 실	81,421	667.5	13,005	- 4.3	121.98	14.57	18.5	71.97				○			○	
	순 창	55,200	342.2	14,500	- 4.0	161.31	10.43	26.6	64.64				○		○		
	고 창	100,062	448.7	5,296	- 4.2	223	11.95	37.5	51.83				○	○			
	부 안	127,978	495.1	27,498	- 2.5	258.48	12.55	42.7	43.34			○		○			
	김 제	171,793	511.5	35,396	- 2.3	335.86	12.75	55.9	21.64			○		○			
	나 주	195,900	648.5	60,700	- 1.7	302.08	14.36	38.5	44.46			○		○			
	담 양	82,263	423.0	22,000	- 2.3	194.48	11.60	25.6	64.13			○			○		

구 분	권역명	인 구 ('83)	면 적 (km ²)	중심도시 면 적	인 구 증 가율	인 구 밀 도	중심도시 반 경	경 지율	임 야율	인구증가율에의한구분				경지율에의한구분			
										고 성장	성장	정체	낙후	평야	준 평야	준 산간	산간
농	군 위	49,000	612.8	12,000	-3.9	79.96	13.96	14.0	76.40				○				○
	의 성	74,000	639.4	24,000	-2.9	115.73	14.26	14.4	75.68								○
	안 계	59,000	529.5	11,000	-4.9	111.43	12.98	23.5	66.15				○		○		
	청 송	61,403	828.0	9,453	-2.6	74.16	16.23	11.8	82.99				○				○
	영 양	48,980	814.1	14,997	-3.6	60.16	16.09	9.7	86.08				○				○
	영 덕	85,000	744.9	16,000	-2.8	114.11	15.39	11.2	81.91				○				○
	청 도	80,000	725.6	21,000	-3.1	110.25	15.19	16.4	71.48				○				○
	고 령	87,340	661.8	12,000	-3.0	131.97	14.51	20.3	68.64				○				
촌	성 주	71,379	613.8	14,977	-4.0	116.29	13.97	22.4	58.48				○		○		
	선 산	59,000	380.0	21,000	-1.3	155.26	10.99	26.6	57.34				○		○		
	상 주	167,000	1,158.4	56,000	-2.2	144.16	19.20	22.2	66.36				○		○		
	점 촌	138,858	612.6	55,569	-0.5	226.67	13.96	24.6	65.21				○		○		
형	문 경	50,844	486.2	17,491	-3.4	104.57	12.44	11.3	84.40				○				○
	예 천	94,000	564.0	28,000	-3.2	166.67	13.39	29.4	59.14				○	○			
	춘 양	42,784	741.9	12,754	-6.3	57.66	15.36	10.3	85.06				○				○
	울 진	89,000	987.5	24,000	-1.7	90.12	17.72	8.6	86.27				○				○
	울 룡	19,000	72.9	12,700	1.9	260.63	4.81	19.8	75.30				○			○	
	충 무	308,534	629.6	82,892	-3.9	490.05	14.15	21.3	71.98	○						○	
	남 해	182,384	538.2	16,412	-1.9	338.88	13.08	24.4	64.26				○				

구 분	권역명	인 구 ('83)	면 적 (km ²)	중심도시 반 경	인 구 증가율	인 구 밀 도	중심도시 반 경	경 지 율	임 야 율	인구증가율에의한구분				경지율에의한구분			
										고 성장	성장	정체	낙후	평야	준 평야	준 산간	산간
농 촌 형	김 해	131,288	393.4	76,001	2.4	333.73	11.19	31.1	54.90		○			○			
	의 령	79,638	486.4	12,215	- 3.1	163.73	12.44	26.6	62.52			○			○		
	창 령	81,273	481.3	23,945	- 3.2	168.86	12.37	26.2	61.74			○			○		
	남 지	79,959	400.9	17,793	- 2.6	199.45	11.29	33.6	51.03			○		○			
	밀 양	158,416	795.9	49,156	- 1.5	199.04	15.91	23.2	66.18			○			○		
	언 양	63,349	497.8	15,782	- 0.4	127.26	12.58	14.7	73.28			○					○
	고 성	103,685	520.7	27,167	- 2.3	199.13	12.87	25.4	66.81			○			○		
	하 동	87,140	738.5	17,499	- 5.3	118	15.33	17.0	74.43				○			○	
	산 청	68,874	793.7	11,020	- 3.2	86.78	15.89	13.7	79.21			○					○
	함 양	64,893	626.2	22,483	- 4.3	103.63	14.11	15.0	79.14				○				○
	거 창	111,189	909.8	40,449	- 2.9	122.21	17.01	15.9	77.62			○					○
	합 천	80,175	697.0	13,459	- 3.9	115.03	14.89	18.4	73.38				○			○	
	서귀포	172,689	866.0	80,389	- 0.3	199.41	16.60	20.7	53.99		○					○	

정 주 생 활 권 의 현 황 (Ⅱ)

구분	권역명	해당지역
대도시형	서울	서울시, 광명시, 과천시, 부천시 (고양군) 신도읍 (시흥군) 소래읍
	부산	부산시 (김해군) 녹산면, 대동면 (양산군) 양산읍, 원동면, 물금면, 동면 (울주군) 기장읍, 철마면, 일광면, 정관면, 장안면
	대구	대구시 (달성군) 기창면, 회원면, 옥포면, 다사면, 하빈면, 논공면 (칠곡군) 기천면, 동명면, 가산면 (경산군) 경산읍, 하양읍, 남산면, 압량면, 남천면, 외촌면, 용성면, 진량면, 자인면 (고령군) 다산면
	인천	인천시 (옹진군) 영종면, 북도면, 용유면, 송림면, 백령면, 대청면
	광주	광주시 (광산군) 송정읍, 비아면, 하남면, 임곡면, 서창면, 동곡면, 평동면, 삼도면, 대촌면, 남평면 (담양군) 고서면, 남면, 대전면 (장성군) 진원면, 남면
	대전	대전시 (대덕군) 신탄진읍, 산내면, 동면, 구치면, 탄동면, 진녕면, 기성면 (논산군) 두마면, 벌곡면, 금산군, 복수면 (공주군) 반포면, 연기군, 금남면
도시형	울산	울산시 (울주군) 농소면, 강동면, 청량면, 웅촌면, 범서면, 온산면, 온양면, 서생면 (월성군) 감포읍, 양남면, 양북면 (양산군) 웅상면

구분	권역명	해당지역
도 시 형	마 산	마 산 시 (의창군) 내서면, 구산면, 진동면, 진북면, 진전면 (함안군) 여한면, 칠원면, 산인면, 함안면
	성 남	성 남 시 (광주군) 광주읍, 동부읍, 오폐면, 초월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서부면
	전 주	전 주 시 (원주군) 삼례읍, 용진면, 상관면, 조촌면, 이서면, 소양면, 구이면 (김제군) 김구면
	수 원	수 원 시 (화성군) 오산읍, 매송면, 봉담면, 비봉면, 남양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우정면, 향남면, 양감면, 정남면, 통탄면, 태안면 (용인군) 구성면, 수지면, 기흥면, 남서면 (평택군) 진위면, 서탄면
	안 양	안양시, 안산시 (시흥군) 군포읍, 의왕읍, 수암면, 군자면
	목 포	목 포 시 (무안군) 일노읍, 삼향면 (신안군) 중도면, 압해면 (영암군) 삼호면
	포 향	포 향 시 (영일군) 구룡포읍, 흥해읍, 연일읍, 오천읍, 신평면, 청하면, 송라면, 기제면, 죽장면, 대송면, 동해면, 지행면
	청 주	청 주 시 (청원군) 양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남이면, 문의면, 부용면, 강내면, 옥산면, 오창면, 북이면, 북일면

구분	원역명	해당지역
도	진주	진주시 (진양군) 내동면, 정촌면, 금곡면, 문산면, 진성면, 일반성면, 이반성면, 미천면, 대곡면, 사봉면, 지수면, 금산면, 집현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사천군) 사천읍, 정동면, 나동면, 곤양면, 곤명면, 서포면 (고성군) 영오면
	제주	제주시 (북제주군) 한림읍, 애월읍, 추자면, 구좌읍, 조천면
	이리	이리시 (익산군) 함열읍, 오산면, 황등면, 함라면, 능포면, 성당면, 용안면, 낭산면, 망성면, 여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삼기면 (김제군) 백구면, 공덕면 (옥구군) 임파면, 서수면
시	군산	군산시 (옥구군) 미성읍, 옥구읍, 옥산면, 회현면, 대야면, 개정면, 성산면, 라포면, 임피면, 위도면 (서천군) 장항읍
	여수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돌산읍, 소라면, 화향면, 남면, 화정면, 삼일읍, 쌍봉면
	춘천	춘천시 (춘성군) 동면, 동산면, 신동면, 남면, 서면, 사북면, 신북면, 북산면, 사내면
형	천안	천안시 (천원군) 풍세면, 광덕면, 목천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직산면, 성거면, 입장면 (연기군) 전의면
	원주	원주시 (원성군) 호저면, 지정면, 문박면, 부논면, 귀래면, 홍업면, 관부면, 신림면 (양평군) 양동면

구분	권역명	해당지역
도	의정부	의정부시 (양주군) 주내면, 회천면, 광적면, 백석면, 장흥면 (포천면) 소흘면
	창원	창원시, 진해시 (의창군) 동면, 북면, 대산면, 천가면 (김해군) 진영읍
	경주	경주시 (월성군) 진천읍, 외동읍, 내남면, 서면, 견곡면, 천북면, 안강읍, 강동면
	강릉	강릉시 (명주군) 성산면, 왕산면, 구정면, 강동면, 사천면, 주문진읍, 연곡면 (평창군) 도암면
시	구미	구미시 (선산군) 산동면, 장천면 (칠곡군) 왜관읍, 석적면, 약목면, 북산면
	충주	충주시 (중원군) 사미면, 상모면, 이유면, 가금면, 금가면, 노은면, 동량면, 산척면, 엄정면, 소태면, 주덕면, 신너면 (제원군)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순천	순천시 (송주군) 송주읍, 월등면, 황전면, 서면, 별양면, 상사면, 해룡면 (여천군) 울촌면 (광양군)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골약면, 진상면, 옥곡면, 태금면, 진월면
	태백	태백시 (삼척군) 도계읍, 하장면, (정선군) 사북읍 (영월군) 상동읍, (봉화군) 석포면

구분	권역명	해당지역
도시형	안동	안동시 (안동군) 풍산읍, 와룡면, 북후면, 서후면, 일직면, 남후면, 남선면, 임하면, 임동면, 예안면, 녹전면, 풍천면, 길안면
	동해	동해시, 삼척시 (삼척군) 원덕읍, 근덕면, 노곡면, 미노면 (명주군) 옥개면 (정선군) 임계면
농촌형	동두천	동두천시 (양주군) 은현면, 남면 (파주군) 적성면
	미금	구리시 (남양주군) 미금읍, 와부읍, 별내면, 진접면, 진건면, 수동면, 화도면
	여주	(여주군) 여주읍, 점동면, 가남면, 능서면, 흥천면, 대신면, 북내면, 강천면
	평택	평택시, 송탄시 (평택군) 팽성읍, 고덕면, 오성면, 청북면, 포승면, 현덕면 (안성군) 공도면, 원곡면 (천원군) 성환읍 (아산군) 둔포면
	문산	(파주군) 문산읍, 금촌읍, 파주읍, 월총면, 탄현면, 천현면, 파평면, 군내면
	벽제	(고양군) 벽제읍, 원당읍, 일산읍, 지도면, 송포면 (파주군) 교하면, 조리면, 광탄면
	연천	(연천군) 연천읍, 전곡면, 군남면, 청산면, 백학면, 미산면, 왕등면, 신서면, 중면
	포천	(포천군) 포천읍, 군내면, 내촌면, 가산면, 신북면, 창수면, 영증면, 일동면, 화현면
	가평	(가평군) 가평읍, 설악면, 외서면, 상면, 하면, 북면

구분	권역명	해당지역
농촌	양평	(양평군) 양평읍, 강상면, 강하면, 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단월면, 청운면, 기제면, 용문면, 개군면 (여주군) 금사리
	이천	(이천군) 이천읍, 신둔면, 백사면, 부발면, 호법면, 마장면, 대월면, 모가면 (광주군) 신태면, 도척면
	장호원	(이천군) 장호원읍, 설성면, 울면 (안성군) 일죽면, (중원군) 양성면 (음성군) 금왕읍, 무극면, 감곡면
	용인	(용인군) 용인읍, 포곡면, 모현면,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외사면, 내사면
	안성	(안성군) 안성읍,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이죽면, 삼죽면, 고삼면
	김포	(김포군) 김포읍, 고촌면, 제양면, 금단면, 양촌면, 통진면, 대부면, 하성면, 월곶면
	강화	(강화군) 강화읍,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내가면, 하치면,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 삼산면, 서도면
형	속초	속초시 (고성군) 거진읍, 간성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수동면
	홍천	(홍천군) 홍천읍, 화촌면, 두촌리, 내촌면, 서석면, 동면, 남면, 서면, 북방면
	횡성	(횡성군) 횡성읍, 우천면, 안흥면, 둔내리, 갑천면, 청일면, 공근면, 서원면
	영월	(영월군) 영월읍, 하동읍, 북면, 남면, 서면, 주천면, 수주면 (정선군) 신동읍 (평창군) 미탄읍

구분	권역명	해당지역
농	평창	(평창군) 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진부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면, 봉평면, 용평면, 도암면 (홍천군) 내면
	정선	(정선군) 정선읍, 신동읍, 동면, 남면, 북면
	갈말	(철원군) 철원읍, 금화읍, 갈말읍, 동성읍, 서면, 곤남면, 곤북면
	화천	(화천군) 화천읍,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양구	(양구군) 양구읍, 남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촌	인제	(인제군) 인제읍, 남면, 북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
	제천	제천시 (제원군) 금성면, 백운면, 봉양면, 송학면 (영월군) 주천면, 수주면, (단양군) 어상천면
	보은	(보은군) 보은읍, 내송리면, 외송리면, 마노면, 탄부면, 삼승면, 수하면, 회남면, 회북면, 내북면, 산외면
	옥천	(옥천군) 옥천읍,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영동	(영동군) 영동읍, 용산면, 황윤면, 황금면, 매곡면, 삼촌면, 양강면, 학산면, 양산면, 심천면
	진천	(진천군) 진천읍, 덕산면, 초평면, 문백면, 백곡면, 이월면, 만승면 (음성군) 삼성면, 대소면, 맹동면
형	괴산	(괴산군) 괴산읍, 증평읍, 감물면, 장연면, 연풍면, 사리면, 칠성면, 문광면, 청천면, 청안면, 도암면, 소수면, 불정면 (음성군)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구분	권역명	해당지역
농	단양	(단양군) 단양읍, 매포읍, 대강면, 제곡면, 적성면, 영춘면 (제원군) 수산면, 덕산면
	금산	(금산군) 금산읍, 금성면, 제원면, 부리면, 군북면, 남일면, 남이면, 진산면, 추부면 (무주군) 부남면
	공주	공주시 (공주군) 이인면, 계룡면, 장기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평면, 유구면 (청양군) 목면
	논산	(논산군) 논산읍,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전면, 채운면 (익산군) 망성면 (부여군) 세도면, 석성면, 조촌면
촌	부여	(부여군) 부여읍, 규암면, 은산면, 내산면, 구룡면, 홍산면, 남면, 임천면, 외산면, 옥산면, 충화면, 양화면, 장암면 (공주군) 탄천면
	서천	(서천군) 서천읍, 마서면, 화양면, 기산면, 한산면, 마산면, 시초면, 문산면, 판교면, 종천면, 비인면, 서면
	대천	대천시 (보령군) 주포면, 노천면, 청소면, 청라면, 감포면, 웅천면, 미산면, 주산면
	청양	(청양군) 청양읍, 운곡면, 대치동, 정산면, 사양면, 화성면, 비봉면, 적곡면, 청남면
	홍성	(홍성군) 홍성읍, 광천읍, 홍북면, 금마면, 홍동면, 서부면, 장곡면, 은하면, 결성면, 갈산면, 구항면 (보령군) 천북면, (예산군) 덕산면

구분	권역명	해당지역
농	예 산	(예산군) 예산읍, 삽교읍, 대술면, 신양면, 광시면, 대흥면, 응봉면, 봉산면, 고덕면, 신암면, 오가면
	서 산	(서산군) 서산읍, 인지면, 부석면, 팔봉면, 지곡면, 대산면, 성연면, 음암면, 운산면, 해미면, 고북면
	태 안	(서산군) 태안읍, 안면읍, 남면, 고흥면, 소원면, 원북면, 이북면
	당 진	(당진군) 당진읍, 합덕읍, 고대면, 석문면, 대호지면, 정미면, 면천면, 순성면, 우강면, 신령면, 송악면, 송산면
	온 양	온양시 (아산군) 송악면, 배방면, 탕정면, 염치면, 음봉면, 영인면, 인주면, 선장면, 도고면, 신창면
촌	정 주	정주시 (정읍군) 신태인읍, 북면, 입암면, 소성면, 고부면, 영원면, 덕천면, 이평면, 정우면, 태인면, 감곡면, 웅동면, 칠보면, 산내면, 산외면, (고창군) 성내면 (순창군) 북흥면, 쌍치면
	남 원	남원시 (남원군) 주천면, 수지면, 송동면, 주생면, 금지면, 대산면, 대강면, 기매면, 덕과면, 보절면, 산동면, 이백면, 운봉면, 동면, 하영면, 산내면
	봉 동	(완주군) 봉동읍, 고산면, 비봉면, 운주면, 화산면, 동상면
	진 안	(진안군) 진안읍, 용담면, 안천면, 동향면, 상전면, 백운면, 성수면, 마령면, 부귀면, 정천면, 주천면
	무 주	(무주군) 무주읍, 설천면, 적상면, 안성면 (영동군) 용화면

구분	권역명	해당지역
농	장수	(장수군) 장수읍, 반암면, 계내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산서면
	임실	(임실군) 임실읍, 청용면, 운암면, 신평면, 성수면, 둔남면, 신덕면, 삼계면, 사촌면, 강진면, 덕치면, 지사면 (진안군) 성수면
	순창	(순창군) 순창읍, 안계면, 동계면, 적성면, 유등면, 풍산면, 김과면, 팔덕면, 구림면 (남원군) 대강면
	고창	(고창군) 고창읍, 고수면, 아산면, 무장면, 해리면, 성송면, 심원면, 홍덕면, 신흥면, 부안면
	부안	(부안군) 부안읍, 단산면, 동진면, 신안면, 계화면, 보안면, 산내면, 진서면, 백산면, 상서면, 하서면, 줄포면
촌	김제	(김제군) 김제읍, 월촌면, 죽산면, 백산면, 용지면, 부량면, 만경면, 청하면, 성덕면, 진봉면, 봉남면, 황산면, 금산면, 광활면
형	나주	금성시 (나주군) 세지면, 왕곡면, 반남면, 공산면, 동강면, 다시면, 문평면, 노안면, 김천면, 산포면, 다도면, 봉황면 (함평군) 나산면
	담양	(담양군) 담양읍, 봉산면, 창평면, 대덕면, 무정면, 금성면, 용면, 월산면, 수북면 (곡성군) 옥과면, 오산면
	곡성	(곡성군) 곡성읍, 오폭면, 삼기면, 고달면, 입면, 곁면, 석곡면, 죽곡면, 목사동면 (송주군) 주암면
	구례	(구례군) 구례읍, 문척면, 간전면, 토지면, 마산면, 광의면, 용방면, 산동면

구분	권역명	해당지역
농	고 흥	(고흥군) 고흥읍, 도양읍, 풍양면, 도덕면, 금산면, 도화면, 포두면, 봉래면, 점암면, 과역면, 두원면
	보 성	(보성군) 보성읍, 노동면, 미력면, 겸백면, 복래면, 문덕면, 득량면, 회천면, 웅치면 (장흥군) 장동면, 장평면
	별 교	(보성군) 별교읍, 율어면, 조성면 (고흥군) 남양면, 동강면, 대서면 (승주군) 외서면, 송광면, 낙안면
	화 순	(화순군) 화순읍, 화천면, 춘양면, 청풍면, 이양면, 능주면, 도곡면, 도암면, 이서면, 북면, 동북면, 남면, 동면
	장 흥	(장흥군) 장흥읍, 관산읍, 대덕읍, 용산면, 안량면, 유치면, 부산면
촌	강 진	(강진군) 강진읍, 군동면, 칠량면, 대구면, 도암면, 신전면, 성전면, 작천면, 병영면, 움천면 (완도군) 고금면, 약산면
	해 남	(해남군) 해남읍, 삼산면, 화산면, 현산면, 송지면, 북일면, 옥천면, 계곡면, 마산면, 황산면, 산이면, 북평면
	영 암	(영암군) 영암읍, 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시종면, 도포면, 군서면, 서호면, 학산면, 미암면
형	무 안	(무안군) 무안읍, 몽탄면, 청계면, 현경면, 망운면, 해제면, 운남면 (신안군) 지도읍, 임자면 (함평군) 함평읍, 손불면, 학교면, 엄다면, 대동면
	영 광	(영광군) 영광읍, 백유면, 대마면, 무량면, 불갑면, 군서면, 군남면, 염산면, 범성면, 흥농면, 낙월면 (함평군) 해보면, 신광면 (고창군) 공음면, 상하면, 대산면

구분	권역명	해당지역
농	장성	(장성군) 장성읍, 동화면, 삼서면, 삼계면, 황룡면, 서삼면, 북일면, 북이면, 북하면 (광산군) 본량면 (함평군) 월야면
	완도	(완도읍) 완도읍, 금일면, 노화면, 군외면, 신지면, 청산면, 소안면 (해남군) 북평면
	진도	(진도군) 진도읍, 군내면, 고군면, 의신면, 임회면, 지산면, 조도면, 가사출장소, 거차출장소 (해남군) 문내면, 화원면
	안좌	(신안군) 안좌면, 자은면, 비금면, 도초면, 흑산면, 하의면, 신의면, 장산면, 팔금면, 암태면
촌	김천	김천시 (금릉군) 농소면, 남면, 아포면, 개녕면, 감문면, 어해면, 봉산면, 대항면, 감천면, 조마면, 구성면, 지례면, 부항면, 대덕면, 증신면 (무주군) 무풍면
	영주	영주시 (영풍군) 풍기읍, 이산면, 평은면, 문수면, 장수면, 안정면, 봉현면, 순흥면, 단산면, 부석면
	영천	영천시 (영천군) 금호읍, 청통면, 신령면, 화산면, 화북면, 자양면, 임후면, 고경면, 북안면, 대창면
	군위	(군위군) 군위읍, 소보면, 효령면, 부계면, 우보면, 의흥면, 산성면, 고노면
	의성	(의성군) 의성읍, 단촌면, 옥산면, 정곡면, 사곡면, 춘산면, 금성면, 계음면, 봉양면, 안평면

구분	권역명	해당지역
농	안 계	(의성군) 안계면, 비안면, 구천면, 단밀면, 단북면, 다인면, 신평면
	청 송	(청송군) 청송읍, 부동면, 부남면, 현동면, 현서면, 파천면
	영 양	(영양군) 영양읍, 입암면, 청기면, 일월면, 수비면, 석보면
	영 덕	(영덕군) 영덕읍, 강구면, 남정면, 달산면, 지품면, 유산면, 영해면, 창수면, 병곡면
	청 도	(청도군) 청도읍, 화양읍, 각남면, 풍강면, 각북면, 이서면, 운문면, 금천면, 매전면
촌	고 령	(고령군) 고령읍, 덕곡면, 운수면, 성산면, 다산면, 개진면, 우곡면, 쌍림면 (달성군) 현풍면, 유가면 (합천군) 묘산면, 가야면, 야로면
	성 주	(성주군) 성주읍, 선삼면, 용암면, 수운면, 가천면, 금수면, 대가면, 벽진면, 초전면, 월항면
	선 산	(선산군) 선산읍, 무을면, 옥성면, 도계면, 해평면, 고아면
	상 주	상주시 (상주군) 증동면, 사벌면, 청리면, 공성면, 외남면, 모동면, 모서면, 화동면, 화서면, 화북면, 외서면, 은척면, 공검면
형	점 촌	점촌시 (문경군) 영순면, 산양면, 호계면, 산북면, 동노면 (상주군) 함창읍, 이안면 (예천군) 용궁면, 풍양면
	문 경	(문경읍) 문경읍, 가은읍, 마성면, 용암리
	예 천	(예천군) 예천읍, 용문면, 상리면, 하리면, 감천면, 보문면, 호명면, 유천면, 개포면, 지보면

구분	권역명	해당지역
농	춘양	(봉화군) 춘양면, 법전면, 소천면, 재산면, 명호면
	울진	(울진군) 울진읍, 평해읍, 북면, 서면, 근남면, 원남면, 기성면, 온정면
	울릉	(울릉군) 울릉읍, 서면, 북면
	충무	충무시 (통영군) 도산면, 광도면, 산양면, 용남면, 육지면, 한산면, 사랑면 (거제군) 신현읍, 장승포읍, 일운면, 동부면, 남부면, 거제면,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둔덕면, 사들면
	김해	김해시 (김해군) 가락면, 장유면, 주촌면, 진에면, 이북면, 생림면, 상동면
촌	남해	삼천포시 (남해군) 남해읍, 이동면, 삼동면, 남면, 서면, 고현면, 설천면, 창선면 (사천군) 사남면, 용전면 (고성군) 하이면
	의령	(의령군) 의령읍, 가배면, 칠곡면, 대의면, 화정면, 용덕면, 정곡면, 궁유면, 유곡면 (함안군) 가야읍, 군북면, 범수면
	창령	(창령군) 창령읍, 고암면, 성산면, 대합면, 이방면, 유어면, 대지면 (합천군) 덕곡면, 청덕면 (의령군) 낙서면, 부림면, 봉수면
	남지	(창령군) 남지읍, 계성면, 영산면, 장마면, 도천면, 길곡면, 부곡면 (의령군) 지정면 (함안군) 대산면, 칠서면, 칠북면
형		

구분	권역명	해당지역
농촌	밀양	(밀양군) 밀양읍, 삼랑진읍, 하남읍, 하북읍, 부북면, 산동면,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상남면, 초동면, 무안면, 청도면
	언양	(울주군) 언양면,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상남면 (양산군) 하북면, 상북면
	고성	(고성군) 고성읍, 삼산면, 하일면, 상리면, 대가면, 영현면, 개천면, 구만면, 회화면, 마암면, 동해면, 거류면
	하동	(하동군) 하동읍, 화계면, 악양면, 적량면, 황천면, 고전면, 금남면, 진교면, 양포면, 북천면, 청암면, 옥종면 (광양군) 다압면
	산청	(산청군) 산청읍, 차황면, 오부면, 생초면, 금서면, 삼장면, 시천면, 단성면, 신양면, 생비량면, 신등면
형	함양	(함양군) 함양읍,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수동면, 지곡면, 서하면, 서상면, 백전면, 병곡면
	거창	(거창군) 거창읍, 주상면, 웅양면, 고제면, 북상면, 위천면, 마리면, 남상면, 남하면, 신원면, 가조면, 가북면 (함양군) 안의면
	합천	(합천군) 합천읍, 봉산면, 울곡면, 초개면, 쌍책면, 적중면, 대양면, 쌍백면, 삼가면, 가회면, 대병면, 용주면
	서귀포	서귀포시 (남제주군) 성산읍, 대정읍, 안덕면, 남원읍, 표선면

<附錄 2> 調 査 表

1985. 9

전국 정주생활권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안녕하십니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2000년대를 향한 복지농촌건설을 위하여 정주생활권개발계획을 단계적으로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 정주생활권이란 중심도시(시·읍·읍 도시)와 배후지가 하나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지니는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생활권역으로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인구의 지방정착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발계획 및 개발행정단위를 의미합니다.
- 본 조사는 향후 2000년대를 향한 농촌지역종합개발계획의 공간적범역으로서의 합리적인 정주생활권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로서 전국의 시·읍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본 조사결과는 현실적인 정주생활권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목적에 따른 보완자료로만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 바쁘시더라도 지역실정과 주민의 시장이용권, 통학권, 의료권 등을 검토하시어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조사표는 1985. 까지 동봉된 회송우편봉투를 이용하여 당 연구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명: _____ 도 _____ 시 (군)

작성자: 성명 _____ (인)

한 국 농 촌 경 제 연 구 원

1. 정주생활권이란 일반적으로 생활권내의 주민이 그 중심도시(시·읍)로부터 일상생활의 서비스를 불편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일일생활권입니다.
2. 이론적인 정주생활권의 공간적 범역은 중심도시(시·읍)을 중심으로 한 반경 16km를 설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대개 1개군의 크기에 해당하는 지역이나 지역내 중심도시 기능의 크기와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3. 정주생활권내의 정주계층과 서비스 수준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정주계층	서비스 수준
	마을권 [*]	○ 일상식료품(1차 구매권) ○ 유치원, 유아원(1차 교육권)
	정주생활권 ^{**}	○ 일상생활용품(2차 구매권) ○ 약국, 보건지소, 병의원(1차 의료권) ○ 국민학교·중학교(2차 교육권) ○ 정기시장 ○ 농기계수리센터
	정주생활권 ^{***}	○ 도·소매 및 내구생활용품(3차 구매권) ○ 전문의원 및 병원(2차의료권) ○ 고등학교·전문학교(3차교육권) ○ 상설시장 ○ 극장·문화회관, 예식장 ○ 행정서비스 중심

- * 마을권은 일반적으로 기초 생활권 단위로 수개의 마을(행정리)을 의미함.
- ** 정주구는 1개 읍·면 또는 2~3개 읍·면단위가 하나의 소 중심지를 중심으로 한 생활권이며, 마을에서 버스로 30분 정도의 거리를 포함하는 공간적 범역임.
- *** 정주생활권의 공간적 범역은 2~3개의 정주구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배후지 마을로부터 중심지(시·읍)까지 버스로 1시간 정도의 접근거리를 뜻함.

- ② 첨부된 도면에는 귀 정주생활권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지역주민의 생활을 고려할 때 주변의 다른 정주생활권에 속하는 읍·면이 있으면 기재해 주십시오.

조정되어야 할 읍·면명	주변의 해당 정주생활권 중심도시명(시·읍)

- 3) 귀 군의 행정구역중 _____ 읍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 소재지명을 기재하시고 주요시설의 유무를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있는 경우 ○표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illegible]

② 기타 읍·면별 통계자료(1983년말)

[illegible]

參 考 文 獻

- 權泰煥外, 1981, 「韓國의 地域社會 開發」, 法文社
- 金安濟, 1979, 「環境과 國土」, 博央社
- 金儀遠, 1982, 「韓國 國土開發史 研究」, 大學圖書
- 金炯國, 1981, 「國土開發의 理論研究」, 法文社
- 南榮佑, 1985, 「都市構造論」, 法文社
- 朴炳柱外, 1981, “地方定住生活圈의 設定 및 開發에 관한 研究”, 內務部
- 朴贊石, 1982, “農村中心都市 開發戰略” 「都市問題」, 2月號, pp. 45 ~ 58
- 宋仁城, 1982, “農村中心地와 農村開發” 「都市問題」, 2月號, pp. 20 ~ 36
- 柳佑益, 1981, “農村人口의 都市指向移動이 農村地域에 미치는 影響”,
「地理學論叢」8 號, pp. 33 ~ 43
- , 1982, “農村工業의 育成을 위한 地域政策” 韓國開發研究院: 農家
所得改編資料集(下), pp. 113 ~ 150
- , 1983, “韓國地理學에서의 地域政策의 爭點” 「地理學論叢」10 號,
pp. 87 ~ 106
- , 1984, “國土開發에 있어서 農村開發의 意義”, 「地理學」30 號,
pp. 28 ~ 40
- 金世烈, 1985, “中間技術 및 한계資源論과 技術開發”, 「地方의 再發見」韓
國社會科學研究所編, 民音社, pp. 130 ~ 157
- 李喜演, 1984, “地域成長의 空間的理論과 地域開發政策”, 「國土計劃」第19
卷 第1 號 pp. 203 ~ 220
- 張 載外, 1981, 「空間構造」, 大學教材出版社
- 鄭址雄, 1984, 「韓國의 農村 —그 構造와 開發—」 서울大學校 出版部
- 曹在六, 1985, “基礎需要理論과 地域開發” 「地方의 再發見」韓國社會科學
研究所編, 民音社, pp. 112 ~ 129

- 崔相哲, 1982, “地方定住生活圈 開發의 背景과 方向”『環境論叢』10 號,
pp. 99 ~ 109
- , 1985, “地方의 時代와 地方開發”『地方의 再發見』韓國社會科學研
究所編, 民音社, pp. 11 ~ 28
- 崔洋夫, 1981, “地方定住生活圈 開發戰略”, 地方化 時代に 있어서 地域開
發의 方向摸索을 위한 세미나 主題發表論文集, pp. 25 ~ 48
- , 1983, “農村發展과 農村計劃”, 『國土計劃』第2號, pp. 1 ~ 15
- 外, 1984, “農村地域의 定住體系와 中心地 開發”, 農村綜合開發에 관
한 研究 1, 韓國農村經濟研究院
- , 1985, “地方發展을 위한 中心都市와 農村開發의 새로운 戰略과
課題 — 定住生活圈概念에 의한 國土認識과 農都統合”, 『地方의 再
發見』, 韓國社會科學研究會編, 民音社, pp. 159 ~ 184
- , 1985, “第6次 經濟·社會發展 5 個年計劃과 生活圈 中心都市의
育成”, 『都市問題』11 月號, pp. 44 ~ 52
- 洪慶姬, 1983, 『都市地理學』, 法文社
- 洪東植外, 1982, 『農村社會學』, 法文社
- 黃明燦, 1984, 『國土開發論』, 경영문화원
- 吉阪隆正外, 1980, 『圈域的計劃論, 新し 地域計劃の視點』, 農林統計協會
- 富田正彦, 1983, 『現代農村計劃論』, 東京大學出版會
- 相川哲夫, 1984, 『農村空間整備論』, ゆたかな社會の 村づくり原論, 農林統計
協會
- 地域計劃研究會, 1978, 『地域計劃: での理論と 實驗』, 農林統計協會
- 地域社會計劃センター, 1982, 農山漁村環境 整備事業の手引
- 富民協會/毎日新聞社, 1985, “21 世紀の日本と農業·農村 — 四全總のゼジ
ヨナー”, 『農業と經濟』, 臨時増刊

- Anthony R, de Souza & J. Brady Foust, 1979, World Space / Economy, Charles E. Merrill Publishing Company
- Boudeville, J.R 1966, Problems of Regional Economic Planning,
Edinburgh : Edinburgh University Press
- Clyde Weaver, 1981, "Development theory and Regional Question : A Critique of Spatial Planning and its Detractors"
Development from Above or Below ? John Wiley & Sons,
pp. 73 ~ 105
- Constaninos A. Doxiadis, 1968, Ekistics :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Human Settlements, Hutchinson of London
- David M. Smith, 1981, Industrial Location, An Economic Geographical Analysis, John Wiley & Sons, Inc
- D. F. Darwent, 1975, "Growth Poles and Growth Centers in Regional Planning' : A Review", Regional Policy Readings in Theory and Applications,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pp. 539 ~ 565
- E. A. J. Johnson, 1970, The Organization of Space in Developing Countries, Harvard University Press
- Friedman. J and C. Weaver, 1979, Territory and Function : The Evolution of Regional Planning, London. Edward Arnold
- Hirschman. A. O, 1958,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 : Yale University Press
- John. Glasson, 1974, Regional Planning, Hutchinson
- M. G. Bradford & W. A. Kent, 1977, Human Geography - Theories and their Applic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 Myrdal . G, 1957, Economic Theory and Undeveloped Regions,
London : Duckworth

- Niles M. Hansen, 1975, "Criteria for a Growth Centre Policy",
Regional Policy Readings in theory and Applications,
 The Massachusettes Institute of Technology, pp. 566~587
- _____, 1981, "Development from above : The Centredown Development
 Paradigm", Development from Above or Below ? John
 Wiley and Sons. pp. 15~38.
- Raanan Weitz, 1979,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 The
 Rehovot Approach", Publications on Problems of
 Regional Development 28
- Walter B. Stöhr, 1981, "Development from below : The Bottom
 up and Periphery- Inward Development Paradigm "
Development from Above or Below ? Johnwiley & Sons.
 pp. 39 ~ 72

빈 면

研究報告 109

定住生活圈設定 및 類型化

1985년 12월

발행인 金 榮 鎭

발행처 韓國農村經濟研究院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 록 1979년 5월 25일 제5-10호

전 화 962-7312~5

인쇄처 ☐주文化印刷製版社

無斷 複製나 轉載를 嚴禁함